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방일권·이창호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위탁책임자: 이애리아(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공동연구자: 방일권(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이창호(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역량구축(3/5년차)

2017 위탁연구

---

발행일	2018년 4월
저자	이애리아, 방일권, 이창호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5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알래스카인디고(02-2277-5553)
I S B N	978-89-8479-914-1 93340 북한 노동자[北韓勞動者], 해외 파견[海外派遣], 러시아(국명)[Russia] 321.543-KDC6 / 331.544-DDC23 CIP2018013232
가격	비매품

---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연구과제명: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역량구축(3/5년차)
- 연구책임자: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
- 위탁과제명: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위탁 기관: 재외한인학회
- 위탁 기간: 2017.04.10. ~ 2017.12.11.
- 위탁책임자: 이애리아(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 공동연구자: 방일권(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이창호(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연구보조원: 박수성(이화여자대학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 례

요약 .....	9
<b>I. 서론 .....</b>	<b>13</b>
1. 문제제기 .....	15
2. 연구의 목표 .....	19
3. 연구의 방법 및 과정 .....	21
<b>II. 북러 관계의 변천과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b>	<b>23</b>
1. 북러 협력과 북한 노동자 파견의 확대 .....	25
2. 김정은 정권의 북한 노동자 파견 지속과 대도시 내 규모 ...	30
3.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와 북한 노동자 .....	34
<b>III. 러시아 대도시 북한 노동자의 진출 및 현황 .....</b>	<b>45</b>
1. 북한 사업소와 관리감독 기관 .....	49
2. 북한 건설노동자의 출현 .....	51
3. 최근 북한 건설노동자 활동의 배경과 현황 .....	54
4. 북한 건설사업소 현황 .....	57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b>IV. 러시아 대도시 북한 노동자의 삶과 고통</b> .....	<b>63</b>
1. 해외 송출과정과 파견지 선택 .....	68
2. 북한 사업소 체계와 감시 .....	73
3. 북한 노동자의 노동 및 수입 .....	79
4.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 .....	84
5. 건설공 이외의 북한 노동자들 .....	89
6. 러시아 정부의 정책변화와 북한 노동자 .....	98
<b>V. 결론: 평가와 전망</b> .....	<b>103</b>
<b>참고문헌</b> .....	<b>109</b>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b>113</b>

## 표 차례

표 II-1 러시아 외국인노동시장 내 북한 노동자 비중 .....	33
표 IV-1 주요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	66
표 IV-2 북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의미 .....	67



## 그림 차례

그림 III-1 등록처 기준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북한 건설사업소의 위치 .....	58
그림 IV-1 모스크바 각 건설사업소의 체계도 .....	75
그림 IV-2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건설 사업소의 체계도 .....	78

# 사진 차례

사진 II-1 북한 노동자를 광고하는 러시아 회사(홈페이지) .....	29
사진 III-1 제니트-아레나(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의 현지 건설업체로 파견된 노동자들 .....	48
사진 III-1 북한대사관 전면과 후면 .....	50
사진 III-3 강성, 목란, 부흥의 사무소 및 기숙사가 위치한 건물 .....	59
사진 III-4 주소시에 평양, 대성 등이 등재돼 있는 건물의 전경 .....	60
사진 IV-1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 임시숙소와 근접 촬영 사진 .....	86
사진 IV-2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	87
사진 IV-3 모스크바 주 아진쑈바의 한 시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구입하는 돼지기름 .....	87
사진 IV-4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제르나야 역 근처의 벼룩시장 .....	88
사진 IV-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칼애프레드릭 맥주·샤슬릭 레스토랑과 그곳에 세워진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조형물 .....	89
사진 IV-6 모스크바 내 북한 한의사가 진료하는 병원 및 병원 내 광고문 .....	90
사진 IV-7 모스크바에서 운영하는 북한 병원 관련 홈페이지 .....	90
사진 IV-8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피복회사가 제작한 상품들 .....	93
사진 IV-9 쇼핑몰 P 전경 및 내부 시설인 아쿠아랜드 .....	96

## 요 약

최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와 맞물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동안 제재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북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수용해온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과연 정책 방향이 변화할 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북제재에 동참하길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협력, 나아가 미래 남북러 경제협력체제 구축까지 겨냥하는 러시아의 상황과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양 수도 지역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이주노동자 및 북한 노동자 정책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도시 파견 북한 노동자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인권 상황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기간제 노동이민의 역사는 시기적으로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요 무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었다. 6.25 전쟁을 전후하여 잠시 중단된 시기를 거친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 범위는 임업 및 목재 가공업, 기타 산업부문에 확대됐다. 특히 1967년 이래 1991년 소련 해체 시기까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소련) 송출은 기본적으로 별목 분야에 집중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절에도 북한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노동자를 송출해 외화벌이를 하는 동시에 활동 영역도 농업과 건설 부문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건설 노동자는 극동 지역을 벗어나 유럽러시아 지역의 대도시 들에도 파견되었다. 2000년 7월 김정일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북러 간 경제협력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 특히

## 요 약

2012년 푸틴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에 따라 남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 내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을 지지하면서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을 선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외국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노동시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 노동자에게 특혜를 베풀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중심지인 수도권 도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보다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책의 변화뿐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적 상황도 북한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업의 구조가 심화돼 있는 한편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북한 사업소가 강력한 감시체제를 운영하는데다가 현지 가정들의 인테리어 수요도 감소하는 등 극동 지역이나 사할린 지역과 달리 개별적 청부 일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말 이후 외국 이주 노동자 정책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독립국가연합 출신자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비자를 받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모든 개별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서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대도시 내 노동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

모스크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흥 진출 지역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으로 약 2,0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 외에도 피복 분야 등에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있다. 피복 제작 분야에

## 요 약

과거 별목공 이탈자(일명 산토끼)가 개입해 북한에서 여성노동자 인력을 공급받는 등 새로운 활로도 개척하고 있다.

최근 이들 대도시에서 고려인 등 현지 한인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 북한 사업소가 현지 법률회사를 통해 큰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직접 활동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모든 사업을 공식화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따라 북한 사업소들이 대응한 결과다. 또한 현지 건설시장 상황도 인테리어 등 소규모 청부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작업 조별로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힘들어짐에 따라 대형 건설 시장에서 하청을 수주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지 대형 건설사와의 하청업체로 협력하게 되면 현지 경찰이 노동자 감독에 개입하면서 벌금을 매기는 일과 같은 위험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러시아의 정책변화가 중첩되는 상황은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 북한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 체계와 러시아 정부의 통제가 보다 치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비해 북한 건설노동자들의 자유와 인권이 상대적으로 더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 파견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조건에서 한층 심한 착취와 감시를 당하고 있다.

감시체계가 치밀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업소 내 관리자의 지위와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착취하는 등의 비리가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의 경우 시설과 위생이 불충분한 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용돈도 도시에서 생활

## 요 약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북한 노동자들은 순응, 이용,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때로 탈출하는 극단적 선택도 한다. 이처럼 대도시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은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한 층 더 고통스러운 측면이 발견된다.

# I. 서론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 1. 문제제기

최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와 맞물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태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의 역사가 긴 러시아 지역에 관한 조사 자료와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들 자료와 보도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인권 침해가 잦아서 각종 재해와 자살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는 점이 강조된다.<sup>1)</sup>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사상적 이완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북한 측이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그 주요 연구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 발간된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실태 보고(The Condition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sup>2)</sup>는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해외로 송출된 북한 노동자의 생활 모습을 밝히는 한편 이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소개했다.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유엔은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유엔 보고서)를 비롯한 활동 결과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를 주로 다루는 이 유엔 보고서에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실태가 실려 있지 않다.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는 아산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 인권(Beyond the UN COI

<sup>1)</sup> 대표적인 예로 연합뉴스의 2016년 9월 20일 기사 제목 “북 해외근로자, 산업재해·질병·자살로 올해만 최소 40명 희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희생자 중 13명의 피해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9/19/0503000000AKR20160919156400014.HTML?template=2085>> (검색일: 2017.10.15.).

<sup>2)</sup>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서울: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Repor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연구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sup>3)</sup> 이를 이어 김석진과 윤여상의 연구가 나왔다.<sup>4)</sup>

2016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이 펴낸 유럽 -특히 폴란드에서- 의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는 조사보고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처지와 그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sup>5)</sup> 또 이애리아, 이창호, 방일권의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에 대한 보고서<sup>6)</sup>, 이영형 등의 연구가 러시아 변경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생활,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sup>7)</sup>

이상의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국외로 파견한 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 인권 침해 사안으로 열악한 환경과 노동 조건-열악한 숙소, 적절한 식사나 휴식 시간 및 의료의 미보장, 외출의 제한 등-에 더하여 임금의 대부분을 강제로 상납해야 함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sup>3)</sup>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Seo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신창훈·고명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sup>4)</sup>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윤여상,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sup>5)</sup> Marte Boonen, Klara Boonstra, Remco Breuker(P.I.), Christine Chung, Imke van Gardingen, Kim Kwang-Cheol, Oh Kyuwook, Anoma van der Veere,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den: Leiden Asia Center, 2016.

<sup>6)</sup>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이애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7).

<sup>7)</sup>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집 2호 (2007), pp. 51~75; 이영형,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 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 pp. 113~143. 그 외 박찬홍, 『러시아 드림: 러시아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 대북제재 이후, 북·러 경제협력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등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 실태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삼림이 많은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 내의 지방 도시들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에 더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항을 폭로하는 일이 뒤섞이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일부 지역의 상황을 러시아 전체로 일반화함에 따라 지역적 다양성과 차이들을 부각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노동자 유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러시아 측 연구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 학계의 관련 연구자로 복지고우(Бок Зи Коу), 진(Ю.И. Дин), 쿠진(А.Т. Кузин), बे직(И.В. Безик), 자브롭스카야(Л.В. Забровская), 바슈(А.С. Ващук), 트로야코바(Т.Г. Троякова)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연구들은 대체로 극동 지역의 북한 노동자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극동이 북한과 가까운데다가 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역사나 향후 협력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8)</sup>

<sup>8)</sup>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Безик И.В., *Участие граждан КНДР в хозяйственном освоении совет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50-е начало 1960-х гг.)*, 2011; Дин Ю.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2015; Забровская Л.В., *Россия и КНДР: опыт прошлого и перспективы будущего (1990-е годы)*, Владивосток, 1998; Она же, *Стратегия 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М.: Морской гос. ун-т, 2011; Ващук А.С., *Факторы и условия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мигрантов из СНГ в Приморье: 90-е гг. XX в. //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освоен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Этн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Вып. четвертый, Благовещенск, 2001; Она ж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012, № 1; Кузин А.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1880-2005)*,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6; Троякова Т.Г., *Рабочая сила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 Ойкумена*, 2017. № 2.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지역에 따라 근무형태나 수입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각 지역별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전체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의 조사 경험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의 경우 러시아 중부나 연해주 지역보다 개인 청부 형태의 노동이 비중 있게 나타나며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파견 희망지역이다. 반대로 러시아 중부에서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집체노동이 많으며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의 일상과 통제, 그리고 노동환경 등과 밀접히 연결돼 있기에 비교론적 시각과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북한 노동자 문제를 살펴려면 북러 관계의 최근 추이와 양자의 경제 협력을 함께 연결하는 접근법이 필수적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북한은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극동개발을 위해서도 중심적 이해관계를 갖는 이웃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한 두 나라 관계가 노동자 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서 북한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은 러시아의 전략적 발전 계획이 배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노동자 정책과 맞물리는 측면도 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일단 노동자가 유입되면 이들을 관리 통제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 대도시 북한 노동자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러 관계의 최근 추이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도시까지 북한 노동자가 진출하는 배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의 노동자 관리 문제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지 북한 노동자의 삶은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양국관계에 미치는 전략적 영향 역시 매우 증시하고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은 이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노동자의 관리 통제 역시 장기적으로 러시아 국가 발전 전략의 영향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반영하려면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연구는 노동자 송출의 규모와 구조,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더해 노동력을 활용하는 북한과 송출 대상 국가 사이의 협력 실태와 전망도 함께 다뤄야 한다. 이점은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른바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9)</sup>

##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러시아 대도시에 중점을 둬으로써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여타 도시 및 기타 지역과 비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대도시 지역, 특히 양 수도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노동자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수도 지역 북한 노동자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북러 관계의 최근 추이와 양국의 경제 협력 추이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건설 부문의 북한 노동자 진출의 역사, 최근 건설노동자를 둘러싼 현지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로서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극동도시들

<sup>9)</sup> “‘남북러 경제협력’ 푸틴 제안에 北, ‘지금은 힘들지만...’,” 『YTN』, 2017.9.8. <[http://www.ytn.co.kr/\\_ln/0104\\_201709080023222841\\_001](http://www.ytn.co.kr/_ln/0104_201709080023222841_001)> (검색일: 2017.9.8.).

과 달리 글로벌 도시(global city)로서 위상과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양(兩) 수도로 위상 경쟁을 지속해 온 이 두 도시는 1990년대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두 도시는 금융자본의 허브와 첨단 현대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유입 역시 보다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에 따른 새로운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산업의 붕괴, 차별적 서비스업의 성장, 제조업의 쇠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공식 부문 확대, 급격한 이주 노동자의 증가 등이 꼽힌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러시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 역시 보다 공식적인 고용체계 및 임금 지불과 송금 체계, 여타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 노동의 전문화, 여성노동자의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인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입법과 행정의 수도라는 특성이 현장의 러시아 측 사업가들과 북한 노동자 간 협력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자 통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러시아 이주 노동 정책의 원리와 실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접근은 특수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수정하는데도 필요하다. 2016년 말 국내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 KBS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비참한 실태를 연속 보도함으로써 대내외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연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자칫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짧은 보도에선 일반화의 오류들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현역 군인들이 파견된 공사장을 다룬 보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숨이 막히는 단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춘 이와 같은 보도는 이 노동자들이 러시아 사회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노동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양 수도 지역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삶을 규명하는 한편 대도시 파견 북한 노동자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인권 상황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3. 연구의 방법 및 과정

본 과제의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현지의 각종 문서와 언론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지조사를 전후하여 러시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장을 관찰하고 북한 노동자 및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자들을 인터뷰했다. 양 도시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2~4월 까지 두 차례의 현지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이애리아가 2017년 2월 11일~21일(연해주 동시 조사), 이창호가 2월 13일~19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이애리아가 4월 10일~22일, 방일권과 이창호가 4월 15일~24일에 걸쳐 수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사전조사 단계와 본조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조사 단계에선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조사 가능

지역 및 단위를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돕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서 현지 러시아 국가 공무원을 면담하고 자료를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지인 및 고려인(한인)들의 인식,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본조사는 사전조사의 심화 단계로서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북한 회사의 실제 현황과 북한 노동자의 노동 실태 및 일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지 러시아 국가 관료 면담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북한 노동자 관련 법제 및 집행과정을 분석했다.

둘째, 러시아 대도시 내 북한 회사의 인력 송출 및 사업 과정을 조사하였다.

셋째, 러시아 대도시 내 북한 노동자의 실태 및 일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과 현지인, 고려인(한인), 중국 조선족, 재외국민들의 사회적 연결망 및 협력과 갈등 관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 II. 북러 관계의 변천과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 1. 북러 협력과 북한 노동자 파견의 확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기간제 노동이민의 역사는 시기적으로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요 무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로 송출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어업 부문에 종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1946~5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극동 지역 북한 노동자 송출은 계절적 노동이주의 성격을 지녔다.<sup>10)</sup>

6.25 전쟁을 전후하여 잠시 중단된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 범위는 임업 및 목재 가공업, 기타 산업부문에 확대되어 갔다. 특히 1967년 이래 1991년 소련 해체 시기까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소련) 송출은 기본적으로 별목 분야에 집중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절에도 북한은 러시아 극동 지역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창구를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농업과 건설 부문 등으로 확대하였다. 북한 노동자 파견 역시 건설 부문 진출과 더불어 극동 지역을 벗어나 러시아 내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럽러시아 지역의 대도시들도 이들의 진출 지역에 포함되었다.

2000년 이래 북러 간 경제협력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이래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양국관계를 다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2000년 7월(19~20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었다.

2000년 7월 김정일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11개 조항의 공동선언(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사안이 단연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이었고 북한의 노동력 파견이 그 핵심이었다. 양 정상간 협의는 같은 해 10월 ‘경

<sup>10)</sup>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애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를 참고.

제무역 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극동 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사용에 대한 합의로 구체화되었다. 이로써 농업, 임업, 건설업, 광업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sup>11)</sup>

북한 노동자의 활발한 진출에는 2000년 5월에 러시아가 단행한 연방 지구 창설과 지역 발전 전략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89개 연방주체를 7개 지구로 묶어 관리하려는 이 조치로 극동연방지구가 탄생했던 것이다. 한반도 북부에서 알라스카까지 닿아 있는 극동연방지구는 광활한 지역으로서 한국의 60배가 넘는 6,169km<sup>2</sup>의 면적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초 당시 극동연방지구의 인구는 691만 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소련 해체로 러시아 연방이 독립한 직후인 1992년의 801만 명에 비하면 100만 명(1/8) 이상이 감소한 수치였다.<sup>12)</sup>

이듬해인 2001년 7월 26일~8월 4일 사이에 김정일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는 2000년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3월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경제 협력을 협의했는데 그 안에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모스크바 소재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02년 8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푸틴과 김정일의 만남이 성사된다. 이 회담은 언론의 보도처럼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문제, 구체적으로 벌목, 광업, 수산업, 석유채굴, 건설 등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으며,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미루

<sup>11)</sup> 2000년 11월 28일~12월 6일에는 북한 외무성 부상(리인규)이 극동 지역을 순회하며 러시아의 지방정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논의한 바 있다.

<sup>12)</sup> 러시아 통계청 자료, <<http://www.fedstat.ru/indicator/>> (검색일: 2017.5.6.). 최근 까지도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구는 2000년도 기준보다 70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어 볼 때 앞의 두 정상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극동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에서 양자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sup>13)</sup>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러시아의 지역 개발이라는 협력 요인은 2000년대 초반 이래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파견 노동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2007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경제 통상협력위원회’를 통해서였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진출 확대가 중점적 논의 사안의 하나였던 이 회의의 결과로서 18개 조항의 ‘러시아와 북한 간 양국 주민의 상대방 영토에서 일시적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이 동년 8월 31일에 체결되었던 것이다. 협정에 따라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주민은 비자와 노동허가를 획득한 경우 합법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노동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체류에 대한 법적 기초가 이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양국은 김정일 정권 말까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sup>15)</sup> 이렇게 2000년 이후 푸틴 체제에서 러시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갔으며, 양국 정상들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북한 노동자의 수와 분포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

---

<sup>13)</sup> <《Правда》>, Aug 22, 2002. “Vladimir Putin and Kim Jong Il to discuss in Vladivostok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and “ally positions” on uniting North and South Korea’s railways.” <<http://www.pravdareport.com/news/world/22-08-2002/16320-0/>> (검색일: 2017.9.16.).

<sup>14)</sup>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временной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раждан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러시아와 북한 당국간 양국 주민의 상대방 영토에서 일시적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http://www.mid.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storage-viewer/bilateral/page-121/45690](http://www.mid.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storage-viewer/bilateral/page-121/45690)> (검색일: 2017.4.30.).

<sup>15)</sup> 2011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및 이후 8월 26일 개최된 5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규모 확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Smith Shane, “North Korean labor camps in Siberia,” <<http://edition.cnn.com/2011/12/15/world/asia/north-korean-labor-camps-in-siberia/index.html>> (검색일: 2017.8.9.).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확산 배경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은 점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위해 추진된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리 건설 등 주요한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여기에는 APEC 기간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포럼의 일반참석자들이 묵었던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건물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국제행사장을 신속하게 건설함으로써 긍정적 평판을 얻게 되자 북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극동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기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 건설노동자들은 캄차카의 워터파크 ‘기적의 섬(추도-오스트로프, Chudo-ostrov)’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극동 지역에서 북한 건설노동자들의 평판은 ‘레몬트 코리아(remont korea)’라는 명칭의 러시아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2013년 2월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웹사이트는 북한 노동자를 미장공, 칠 등 건설 전반에 걸친 숙련공들로 광고하고 있고 트위터(<https://twitter.com/remontkorea>) 등 SNS를 통해서도 수리 사례와 비용을 알리면서 ‘왜 북한인<sup>17)</sup>이 우수한가’를 외부 평가를 인용하며 선전하고 있다. 북한 당국과 사이트 운영자의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북한 노동자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영업 전략을 가진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노동자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현지인과의 협력적 사업 형태가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16) “‘북한 인부 최고’ 러시아 건축회사 광고 눈길,” 『자유아시아방송』, 2016.7.19,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labor-07192016145342.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labor-07192016145342.html)> (검색일: 2017.11.10.).

17) 러시아어로는 *koreec*이며 이는 북한인과 한국인 및 현지의 고려사람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구분 없이 사용되나, 여기에서는 북한인을 의미한다.

사진 II-1 북한 노동자를 광고하는 러시아 회사(홈페이지)

출처: “양질의 아파트 수리를 하는 북한인들”이라는 제목 아래 고용된 인부들의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다. 레몬트 코리아 웹사이트, <remontkorea.ru> (검색일: 2017.11.10).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직접 북한 출신 외국인 노동자 수 확대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러시아 연구자는 이들 건설 노동자들의 분포를 언급하면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건설현장에서 북한 출신 건설노동자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으며 노브고로트 주에 소재한 공장에서 근로하는 일부 기계공들도 건설노동자 그룹으로 유입되었다고 설명했다.<sup>18)</sup>

<sup>18)</sup> “Л.В. Захарова, Экспорт рабочей силы из КНДР(북한으로부터의 노동력 수출),” 미발표 자료 및 연구자와의 인터뷰(2017.2.20.) 요약 정리.

## 2. 김정은 정권의 북한 노동자 파견 지속과 대도시 내 규모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표방해 김정일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한편으로 집권 초기부터 부친의 ‘선군정치’보다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래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무장을 강화하는 강경정책을 표방하는 동시에 융통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정책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sup>19)</sup>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과 노동자 파견은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김정은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에 재집권한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극동개발을 위해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도 배경이 된다.<sup>20)</sup>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수년 전부터 유럽에 치우쳤던 외교와 경제 협력의 비중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안보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동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전략의 강조점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보, 상호신뢰 및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sup>21)</sup>

이런 정책적 맥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을 담아 2013년 2월에 발표한 ‘개념(концепция)’에서 “러시아는 호혜적 협력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 내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

19) 장덕준,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현황, 동인,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연구』, 제24권 2호 (2014), pp. 274~276. 저자의 이러한 평가는 Nicholas Levi, “Insanity or Part of Plan?: Prospects of Changes to North Korea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PLISM Policy Paper*, Vol. 1, No. 84 (2013), pp. 1~5에 토대를 둔 것이다.

20) 현승수, “북러관계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22 (2014.12.31.), p. 2.

21) 장덕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중소연구』, 제40권 2호 (2016), p. 85.



소로 볼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을 지지하며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에 담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나가고자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sup>22)</sup>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외교 전략으로서 의미가 큰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을 병합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외교, 경제적 공세에 직면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외교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북한과 협력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한편 대외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와의 공조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sup>23)</sup>

이와 같은 배경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과 러시아는 새로운 밀착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4년 양국 경제협력에도 밀착관계가 잘 드러난다. 2014년에 북한과 러시아는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의 방북(3월),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의 방북(4월), 제6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의 개최(6월), 리수용 외무상의 방러(10월)로 이어지는 최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경제문제를 협의한 바 있었다. 특히 2014년 6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 6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쌍무교역에서 루블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자 간소화에도 합의하였다.<sup>24)</sup>

---

22) The Russian Federation,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 Putin on February 12, 2013: 장덕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pp. 85~86에서 재인용.

23) 장덕준,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pp. 290~293.

24) Ramil Sticov, “Russia and North Korea Sign Deal to Trade In Rubles,” RIA Novosti, 2014.5.5, <<http://www.investmentwatchblog.com/business/163932-russia-nkorea-trade-deal/>> (검색일: 2017.9.29.).

양 국민에 대한 비자 간소화 조치는 2017년 8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 국민에 대해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등으로 진전되는 상황이다. 2017년 8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18개 나라 국민들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이 조치를 두고 러시아 언론은 사실상 비자 면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면제 대상국에 북한이 인도, 일본과 함께 포함된 것이다. 특히 북한 사람이 관광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자비자 발급 조치는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이 30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 노동자가 일단 러시아에 입국한 뒤 북한 당국이 개입해 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어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sup>25)</sup>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 협력은 이처럼 양국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진전되고 있으며 2014년 이래 한층 긴밀해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노동자 파견 확대 문제를 꾸준히 관심사로 제기함에 따라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외국인 노동 시장에서 북한 노동자의 비중과 본 조사 대상 지인 수도급 대도시의 북한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통계청의 공식 자료<sup>26)</sup> 및 면담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5년 말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러시아 내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비CIS 국가 출신자) 중 북한 사람은 17~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 출신자 순위로 보면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sup>25)</sup> “러시아, 극동지역 전자비자 북한인 포함... 해외노동 차단 압박 역행,” 『VOA』, 2017. 8.5, <<https://www.voakorea.com/a/3973053.html>> (검색일: 2017.9.28.).

<sup>26)</sup> 러시아 통계청 자료는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러시아 사회-경제 상황), 2016년 각 분기별 자료 및 2017년 상반기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자료는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40087276688](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140087276688)>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2016년 자료(<[http://www.gks.ru/bgd/free/B16\\_00/Main.htm](http://www.gks.ru/bgd/free/B16_00/Main.htm)>)와 2017년 상반기 자료(<[http://www.gks.ru/bgd/free/B17\\_00/Main.htm](http://www.gks.ru/bgd/free/B17_00/Main.htm)>))로 구분되어 있다. (검색일: 2017.9.20.).

표 II-1 러시아 외국인노동시장 내 북한 노동자 비중

(단위: 천명)

시기	유효 노동허가서 소지자	이중 비CIS 국가 출신자의 수	북한 노동자의 수	북한 노동자의 비율
2016.1분기	181	148.3	31.2	17.2%
2016.2분기	174.3	143.9	31.5	18.1%
2016.3분기	167.1	138.5	31.9	19.1%
2016.4분기	143.9	118.6	29.1	20.2%
2017.상반기	132	108.1	25.2	19.1%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러시아 통계청),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러시아의 사회-경제 상황) 각 분기별 자료. <[http://www.gks.ru/bgd/bgd/free/B16\\_00/Main.htm](http://www.gks.ru/bgd/bgd/free/B16_00/Main.htm)>; <[http://www.gks.ru/bgd/free/B17\\_00/Main.htm](http://www.gks.ru/bgd/free/B17_00/Main.htm)>. (검색일: 2017.9.20.).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한정하여 정확한 북한 노동자 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각 도시가 북한 노동자의 수를 공식 통계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부분적인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추산이 가능하다.

모스크바 내 노동자 수는 2,000~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사관 영접부에서 모스크바 외곽 지역으로 파견하는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3,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노동자 수는 쿼터를 기준으로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나 실제 건설 분야 종사 인력의 규모는 2,000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sup>27)</sup>

모스크바에 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노동자 규모는 현지 언론 자료 등에서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식통계를 인용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북한 노동자

<sup>27)</sup> 인터뷰 조사 및 “Помещение Труда(일 자리),” <<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 2017. 2.9. 기사(검색일: 2017.8.26.)에 근거한다.

는 총 3,361명인데 비해 2위 터키는 2,854명, 3위 중국은 1,231명으로 북한 노동자가 중국 노동자의 3배에 가까울 정도다.<sup>28)</sup>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은 노보시비르스크 내 3개 회사에 150명의 노동자가 들어왔음을 알리면서 러시아 정부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가 4만7,364명에 달했다’고 보도하였다.<sup>29)</sup> 그런데 이는 2017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3.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와 북한 노동자

노동 이민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가 큰 곳에 집중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는 체제전환 이래 1991년까지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국가들로부터 노동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러시아로의 노동 이주는 경제적인 동인만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즉 CIS 국가들의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 및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성, 사회 개혁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작용했다. CIS 국가 출신의 노동이민자들은 지리적 근접성에 더해 언어 및 문화적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가진데다, 다양한 사업관계나 인간관계를 통해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일자리가 있을 경우 재빠르게 러시아 연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 경제의 상대적 안정도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러시아로의 이주 노동은 사회 경제적 현상이다. 그것은 러시아 국가 발전에 모순적인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비숙련 노동자

28) “Квот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урезали на треть (외국인 노동자 쿼터 1/3 감소하다),” <《Известия》>, 2016.2.5, <<https://iz.ru/news/603300>>. (검색일: 2017.7.8.).

29) “북, 러시아 파견 해외 인력 수출 늘여,” 『자유아시아방송』, 2017.8.9,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40-c5b4b514b85c/nkdirection-0808201](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40-c5b4b514b85c/nkdirection-0808201)> (검색일: 2017.11.15.).

가 부족한 러시아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건설과 운송, 농업 부문 등은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활기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을 억제하는 점이 지적된다. 저임금을 받으며 버티는,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소수 공동체들의 활동 공간이 형성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위협하다.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 노동 이민자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제도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 전반의 현대화와 문명화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법조항이 바뀌에 따라 노동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법률들도 도입된 것이다.<sup>30)</sup>

러시아는 2014년 11월 24일자 연방법 제357호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 시민의 법적 지위” 및 러시아 연방의 개별법에 대한 “연방법 개정에 관한 사항”<sup>31)</sup>을 의결한 후 동년 12월 22일에 연방법 제109호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 및 이주자의 이주 등록”을 개정<sup>32)</sup>함으로써 노동 이민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였다. 새 법률은 이주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sup>30)</sup> 이하 상세한 내용은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러시아로의 노동 이주),” *Businessman*, <<https://businessman.ru/new-trudovye-migranty-v-rossii.html>> (검색일: 2017.11.20.)의 자료와 현지 조사 중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sup>31)</sup>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357 от 24.11.2014 (ред. от 08.03.2015)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연방법 제357호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 시민의 법적 지위 및 러시아 연방의 개별법에 대한 “연방법 개정에 관한 사항”(2011년 3월 8일 개정), 법안 전문은 <<https://rg.ru/2014/11/27/inostr-dok.html>>를 참조.

<sup>32)</sup>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109 «О миграционном уч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д. от 22.12.2014) (연방법 제109호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 및 이주자의 이주 등록”(2014년 12월 22일 개정)). 연방법 제109호는 2006년 8월 18일에 발효된 것으로서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인 2015년 11월 28일에 한 차례 더 개정되어 현재 발효 중이다. 법안의 전문은 <<http://www.kremlin.ru/acts/bank/24033>>를 참조.

국익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입장에서 볼 때 자유가 확대되기보다 통제가 엄격해졌음을 느끼기에 충분한 변화가 뒤따랐다. 2013년 이래 긴급히 준비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르면 예전의 CIS 국가 대부분처럼 비자 면제 대상 국가로부터의 이주는 외국인 노동력 쿼터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다시 말해 러시아 각 지역에 대한 쿼터를 초과해도 취업 허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비자 면제 대상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쿼터 규제를 계속 적용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하도록 제도화되었다.<sup>33)</sup> 러시아에서 일할 권리를 의미하는 노동허가를 노동자 스스로 혹은 고용주의 비용으로 취득해야 하게 된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 이주자들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모든 개인은 러시아 연방에 입국할 때, 이주 카드의 '취업 목적란'에 '노동'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명시하면 노동허가증이 나오지 않는다. 또 작업지에 도착해서도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이어진다. 이민자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이민국(ФМС)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려면 여권을 공증 번역해야 하고, 러시아어로 시험을 치러야 하며, 러시아 법률의 기초와 역사를 배웠음을 증명해야 하고, 건강 진단을 받고 건강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납세자 번호(ИНН)를 받는 것 등이 필수 사항이다. 즉 노동자는 도착 후 이민국의 지역 지사에 이주 등록을 해야 하며, 4명의 의사(AIDS 감염 여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전염병 전문의, 마약 전문

<sup>33)</sup>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수의 국가(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를 제외한 모든 CIS 국가 출신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의, 치과 및 피부과 의사로 구성)로부터 건강 진단을 먼저 받은 후 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하며,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 연방법의 기본 사항을 묻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특허가 있다면 관련 등록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을 거주지와 도착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한 각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노동허가증 발급비는 2015년까지 1,568 루블이었다.<sup>34)</sup> 건강진단 심사단 구성비용으로 3,300 루블이 필요하고 노동 이주자를 위한 시험 응시 비용은 공식적으로 4,900 루블이다.<sup>35)</sup> 노동자가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sup>36)</sup>

러시아 정부는 복잡하게 강화된 새로운 노동허가 취득절차를 빨리 정착시키고 불법 이민을 척결할 목적으로 출입국법 위반자에 대한 입국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북한 노동자의 경우는 쿼터의 규제 아래 있어 비자와 노동허가증을 함께 받아야 러시아에서 노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쿼터 및 노동허가증 발급 전망은 앞서 살펴본 새로운 법률과 관련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기준 러시아 기업들에 할당된 북한 노동자 고용 쿼터는 4만7,279명이나 러시아 연방이민청 자료상 북한 국적 체류자는 3만4,020명이며 이 중 18세 이상 노동 가능한 북한 사람은 3만3,682명으로 나타났다.<sup>37)</sup> 2016년도부터 북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기

---

34) 노동자들은 여기에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모스크바 지역의 경우는 모스크바 순환 도로에서 60km 가량 떨어진 사하로보(Сахарово) 촌의 이민국 지부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35) 모스크바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40개 기관을 찾아가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36) 모스크바의 경우 노동자는 사하로보 촌의 이민국 지부에서 바로 14,000 루블짜리 의료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다.

37) 이어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p. 35.

시작해, 같은 해 4분기 기준 2만9,100명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수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 비례해 줄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블화가 절하되어 노동 시장의 매력이 감소하고 국내 실업자가 늘어난 점과 함께 노동허가제 도입 및 쿼터 축소 등 이민 통제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초 러시아 노동부는 “원거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쿼터를 축소함으로써 비자 면제 국가 시민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노동부 담당 고위 공무원들은 400만 명에 육박하는 러시아 실업자들을 우선 고용되도록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sup>38)</sup>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2013년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 41만126 건에서 2014년 35만7,894 건으로 약 13% 줄었고, 2015년의 경우 27만5,856 건으로, 다시 2016년 21만3,929 건으로 승인되어 2년 연속 23%씩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17만7,043건(전년 대비 17% 감소)이었다.<sup>39)</sup> 노동자 쿼터는 각 지역의 경제 사정에 따라 할당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모스크바 시는 1만 251건, 모스크바 주는 1만2,727건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배정받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는 전체 쿼터의 감소추세와 달리 모스크바 시 및 주보다 많은 1만7,583건을 받았던 반면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경우는 990건에 불과했다.<sup>40)</sup>

2015년 러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전년 대비 70%나 줄었고, 이

38) “Квот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урезали на треть (외국인 노동자 쿼터 1/3 감소되다),” <《Известия》>, 2016.2.5, <<https://iz.ru/news/603300>>. (검색일: 2017.7.8.)을 참조.

39) “Россия не резиновая(러시아는 고무가 아니다),” *Gazeta Spb*, 2017.10.26, <<https://www.gazeta.ru/business/2017/10/26/10958738.shtml>>. (검색일: 2017.11.20.).

40) 관련해서 <<http://nuzhnaviza.ru/rf/kvoty-dlya-inostrancev>> (검색일: 2017.10.15.) 참조.



에 따라 건설 및 농업 분야에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초부터 저임금으로 이민자를 고용해왔던 분야(물류 및 청소 회사 등)는 갑작스런 인력 부족을 경험하기도 했다. 노동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직접적 이유가 됐다. 또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이 관련 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점도 업계가 인력 부족을 겪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sup>41)</sup>

이 같은 추세 속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쿼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보도에서도 최근 5년간 러시아 정부가 외국 노동자 쿼터를 57% 줄였으며 2018년에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올해보다 20% 가량 더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sup>42)</sup>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쿼터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경제 개발, 극동개발부와 북한 대외경제성이 2017년 11월에 2018년 북한 노동자 쿼터를 현재의 4만 명 선에서 2만5,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sup>43)</sup>

북한 노동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 시민에 해당하므로 비자 없이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받으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이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호혜적 관계의 틀 안에서 형성된 노동자 파견 체제가 편리하게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을 선언하였고, 국내 노동시장 관리를 위해 외국 노동자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 노동자에게

41)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러시아로의 노동 이주),” *Businessman*, <<https://businessman.ru/new-trudovye-migranty-v-rossii.html>> (검색일: 2017.11.20.).

42) “Россия не резиновая(러시아는 고무가 아니다),” *Gazeta Spb*, 2017.10.26, <<https://www.gazeta.ru/business/2017/10/26/10958738.shtml>> (검색일: 2017.11.20.).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140,423 건이 될 것이며 이는 실제 필요 인력을 위한 약 10만8천 건과 예비 쿼터 3만2,400 건으로 구성되었다.

43)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4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감축,” 「KBS」, 2017.11.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75273>> (검색일: 2017.11.26.).

특혜를 베풀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중심인 수도권 도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정책이 보다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노동자 입국의 첫 단계인 쿼터를 받는 것부터 어려워진 것이다. 러시아 전역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통상 신청 수의 40% 가량만 허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노동자가 필요한 회사들은 실제 필요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 쿼터를 당국이 더 줄이면서<sup>44)</sup>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러시아 고용주는 예전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됐다.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나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하면서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북한과 러시아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쿼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증가한 지역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노동 시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sup>45)</sup> 또 외국인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러시아인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곧 노동 비용이 증가하면서 다시 단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수도 있다. 현지 전문가들도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줄여서 러시아 국민들의 실업률을 낮추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키울 것으로 믿고 있다. 중앙아시아 등 CIS 지역 출신

44) 2016년에 정한 2017년 쿼터는 신청 건 전체의 10% 정도만 허가되었다.

45) 2015년 5월에 러시아 이민국은 러시아의 외국인 수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러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이 210만 명, 타지인이 약 1백만 명, 카자흐스탄 시민이 60만 명, 키르기스스탄 시민이 50만 명에 이르러 중앙아시아 주민 수만 해도 420만 명이 넘었다. 동시에 러시아에는 2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있다. 2015년 5월 6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민국장은 당시 러시아에는 1,250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전년 대비해 약간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했다.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러시아로의 노동 이주),” *Businessman*, <<https://businessman.ru/new-trudovye-migranty-v-rossii.html>> (검색일: 2017.11.20.).

무비자 노동자가 줄어들면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 정부가 2018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가장 많이 할당한 광업, 수리 및 건설 작업 부문(약 4만5,000 건)에서 비중이 크며,<sup>46)</sup>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테러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 역시 북한 노동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 기간이었던 2017년 4월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사고가 좋은 예다. 이 사건 범인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밝혀진 것을 계기로 러시아 내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향후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이 요주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규율이 잡힌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즉, '정의'와 '법치'를 실현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에 맞는 외국인 숙련 노동력에 대해서는 보다 호의적으로 수용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 기업과 북한 회사 사이에 노동계약이 체결되면 러시아 기업이 절차를 밟아 초청장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노동 비자를 발급받고 러시아에 입국한다. 외국인을 쓰는 러시아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전에 외국 노동력 유치 쿼터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외국인의 노동과 고용 필요성을 밝히는 설명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외국 인력을 유치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시민을 위한 주거 및 의료 서비스(의료기관과의 계약)에 관한 보증서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서한,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려는 자리에 러시아 직원을 채용하기

---

<sup>46)</sup> “Россия не резиновая(러시아는 고무가 아니다),” *Gazeta Spb*, 2017.10.26, <<https://www.gazeta.ru/business/2017/10/26/10958738.shtml>> (검색일: 2017.11.20.).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 신청을 전년도 8월 1일 이전에 해 두어야 한다.

지역 이민국 인적 자원 센터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은 2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사용 허가를 발급하거나 쿼터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노동자 유치 쿼터를 받은 고용주는 당국에 초청 대상자 개인의 관련 서류(여권 사본, 교육, 자격, 전문성 입증 관련 문서 등)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정 외국 시민에게 러시아 연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당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외교부 등을 통해 해당 인물에게 초청장을 보낸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러시아 회사가 노동자 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쿼터와 실제 활용 노동력 사이에 격차가 생겨 법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 비자를 발급받아 러시아에 들어오게 된다. 통상 체류 기간은 3년(~5년)이며, 도착 후 비자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초청 대상 외국인이 입국하면 입국신고서, 취업허가증, 노동수첩(없을 경우 고용주가 작성), 자발적 의료보험 등을 첨부하여 도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3일 내에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모두 마치는데 걸리는 시기를 밝혀야 하며, 그 시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시해야 한다.

2016년 6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할이 연방 이민국에서 내무부로 넘어감에 따라 고용체결 사실 보고를 내무부에 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 내무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같음할 수도 있다.<sup>47)</sup>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했음을 보고하는 성격이 크다.

<sup>47)</sup> 비자 체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은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работу в 2017 году (2017년도에 일할 외국인 노동력 유치),” *Zashtatom*, <<https://zashtatom.ru/novosti/privlechenie-inostrannoy-rabochey-sily-na-rabotu-v-2016-godu/>> (검색일: 2017.11.29.)의 주요 내용을 비교 참조하였다.

비자에 의한 초청은 서류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노동자가 초청 기업 소속 활동자로 등록되는 형식이므로 거주 등록 확인 등 필수적인 절차 외에 별도의 개별적인 후속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앞서 밝혔듯 러시아에 도착한 외국인 노동자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라고 불리는 노동허가증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으려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러시아어와 역사, 문화와 러시아 연방 기본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노동허가증 발급제도는 러시아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시험을 실시한 뒤 2013년 12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허가증이 필요하다는 법령이 발표되고, 2014년 11월 관련 법령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북한 노동자로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큰 과제 아닐 수 없다.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하지만 북한에서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반대로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허가증을 비싸게 사거나 러시아어가 가능한 노동자가 대신 시험을 치르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아예 시험 성적표를 사는 경우도 있다.<sup>48)</sup>

시험은 세 영역(언어, 역사, 법)에서 100점 만점에 각각 5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단번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러시아에 처음 체재하는 한 달 동안 무제한 재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은 북한 노동자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출신자 등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문장을 완성하는 필기시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시험이 반복되면 업무 시작일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시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된다. 시험을 관장하는 전문 센터의 직원에 따르면 러시아어 시험이 반복됨에 따라 센터와 고용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8) 이에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p. 31.

시험을 피할 방법도 있다.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최대 1 년만 체류 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온 노동 이주자는 해당 기한 내에 시험에 합격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 러시아 역사와 법을 문화권이 다른 단기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현지 업체들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sup>49)</sup>

본 조사 시기에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한 업체 'A'가 모스크바 근교 봉재공장에 북한 노동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대신 발급해 주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회사는 대표적인 노동허가증 발급회사인데 한 관계자는 이 회사처럼 노동허가증을 대신 발급하는 회사가 전국에 120 여 곳이 있었으나 2017년 초 현재 90개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노동허가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 측 고위 인사와 특정 회사 사이에 결탁이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 L 씨가 특정 회사를 지정해 허가증을 교섭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경우 발급 회사가 총영사에게 리베이 트를 준 것으로 보인다.

A 회사가 성공하는 비결은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출장 교육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며 심지어는 해외지사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극동 지역 전체 및 외국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B 회사와 합병함으로써 극동 지역을 통해 출입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응시자가 100명 이상일 때 1인당 4,000 루블, 10-100명일 때 4,500 루블을 받으며, 시험을 주관하는 N 대학에 1인당 3,000 루블을 지급한다.<sup>50)</sup>

49)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러시아로의 노동 이주),” *Businessman*, <<https://businessman.ru/new-trudovye-migranty-v-rossii.html>> (검색일: 2017.11.20.).

50) 'A 회사' 관계자와 연구자 간의 2017.2.19. 인터뷰에 기초한다.

# Ⅲ. 러시아 대도시 북한 노동자의 진출 및 현황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본 조사단은 2016년 연구조사 당시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사할린 이 수입이 좋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지배인 임명과정에서 받는 뇌물이 최근 크게 상승함에 따라 조만간 노동환경이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언을 들은 바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파견 지역이 사할린이 아닌 옴스크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소치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노동자 출현과 이들의 활동은 조사된 선례가 없다. 또 러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인 두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특히 현지 시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흥미로운 점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 중인 북한 건설노동자와 관련하여 2016년 말에 발생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 참여 북한 노동자의 사망 사건 보도 및 그 여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11월 14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 경기장인 제니트-아레나(Zenit-Arena) 건설 중 사망한 북한 출신 노동자에 대한 소식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이 보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건설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 나아가 노르웨이의 축구 잡지 『*Josimar*』가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축구장 건설현장에 11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sup>51)</sup>

---

<sup>51)</sup> 이 사건은 이는 당시 국내 언론에도 기획으로 보도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북한 노동자 100여명, 러시아 경기장 건설 현장서 노역,” 『KBS』, 2017.3.30, <[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news\\_view.htm?No=36683&lang=k](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news_view.htm?No=36683&lang=k)> (검색일: 2017.4.2.).

사진 III-1 제니트-아레나(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의 현지 건설업체로 파견된 노동자들



출처: "The slaves of st. petersburg," <<http://www.josimar.no/artikler/the-slaves-of-st-petersburg/3851/>> (검색일: 2017.5.10.).

물론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이전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다. 앞의 사건 외에도 2016년 6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빅보르크 지역(파르고로보 Парголово)에서 33살의 북한 출신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 3월에 있었던 53세의 페인트 공 사고 사망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확인된다.<sup>52)</sup> 하지만 이들 보도는 앞의 경우와 달리 별다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월드컵 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성(태성)' 소속 48세 북한 남성 노동자 사망사건 보도는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반향을 불러일

<sup>52)</sup> "Рабочи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гиб на стройке на севере Петербурга(북한 노동자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부 건설현장에서 사망)," *Gazeta Spb*, 2016.6.20, <<http://www.gazeta.spb.ru/1959700-0/>> (검색일: 2017.4.2.).

으며 러시아 외교부까지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상원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방조했는지를 조사해 확인되면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 주요한 계기였다.<sup>53)</sup>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직업동맹(프롭사유즈)도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계약과 근로조건 아래 제니트-아레나 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성, 지위, 근로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하로바(Muria Zakharova) 대변인이 5월 25일 러시아의 국가적 건설 프로젝트에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책임 있는 당국”이 완전히 통제한다면서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체류 조건은 러시아 노동 및 이주 법규에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sup>54)</sup>

## 1. 북한 사업소와 관리감독 기관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노동자 사업소의 현황이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북한 노동자들 역시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각 사업소의 관리 감독에 주력 북한대사관(모스필리몵스카야 거리(Ul. Mosfiljmovskaja))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사관 안에 있는 영접부 건물 일부를 사업소가 임대해서 쓴 적도 있다고 한다. 대사관이 직접 북한 사업소의

53) “러시아, 극동지역 전자비자 북한인 포함... 해외노동 차단 압박 역행,” 「VOA」, 2017. 8.5, <<https://www.voakorea.com/a/3973053.html>> (검색일: 2017.9.30.).

54) “Профсоюзы попросили проверить положение рабочих из КНДР на «Зенит Арене»(〈제니트-아레나〉의 북한 노동자 상황에 대해 프롭사유즈가 점검을 요구하다),” <RBC>, 2017.5.26, <<https://www.rbc.ru/politics/26/05/2017/5927e6ca9a7947c5d41fedc8>> (검색일: 2017.10.2.).

각 지배인(사장)을 관리하며 이들이 계획분을 대사관에 납부하고 사업소 관리자들의 당생활총화도 대사관에서 열린다.

사진 III-1 북한대사관 전면(좌)과 후면(우)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모스크바 내 북한 노동자수는 앞서 설명했듯이 2,000~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회사별로 차이가 많지만 한 회사의 노동자 수가 200~500명 범위 내 규모이므로 평균 300명으로 잡고 전체 수를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전후 모스크바의 건설이 호황일 때 북한 노동자 수가 2,000~최대 4,000명에 달했다는 견해가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파견 북한 노동자 수는 쿼터 기준으로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건설 분야 인력은 2,000명인 것으로 보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2016년 여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국인 노동자(약 2만6,000명)의 약 1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sup>55)</sup>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모스크바의 대사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없다. 대신에 북한의 무역대표부(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ТПП)<sup>56)</sup>가 각 사업소를 관리 감독한다고 알려져 있다.

<sup>55)</sup>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ред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сократилось в Петербурге до 25%(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이민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수 25%까지 감소),” Tass, 2017.8.9, <<http://tass.ru/obschestvo/4472497>>. (검색일: 2017. 10.5.)의 보도에 근거하였다.

<sup>56)</sup> 북한의 무역대표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바실리오스트롭스키 구역 나히보바 거리(Ul. Nakhimova)의 한 대형 호텔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무역대표부는 2005년에 북러 양국 대표부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실질적인 정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 사이에 무역대표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는 현지의 천연탄산수, 의약품, 출판, 세컨핸드 용품, 가스통, 피혁,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무역 거래와 투자활동을 권유하는 활동을 벌여왔지만, 사실상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무역대표부 지부는 러시아에 의류 및 건설자재를 수출하고, 철강류, 펄프,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도 건설을 비롯해 봉제 사업, 의학, 레스토랑 사업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무역지도원은 대사관을 통해 외교관 형식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외교관은 아니며 인력 송출도 하고 장사도 하는 '장사꾼(무역일꾼)'이다. 그렇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는 달리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 때문에 무역지도원들이 북한 노동자 인력 송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무역대표부와 건설 사업자간 역할과 관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2. 북한 건설노동자의 출현

북한 노동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게 된 것은 200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정일은 북한 인력이 더 많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김정일 방문 이후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입되었고 어떤 분야의 노동 활동에 종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처음 출현한 것은 2005~2006년 사이라는 증언이 있다.<sup>57)</sup>

북한 노동자의 건설 현장 참여는 당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러시아 언론 텔로보이 페테르부르크(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는 2006년에 ‘인터콘’이라는 회사(ООО Интеркон)가 처음 북한 건설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작업한 공사 현장도 명시하였다.

인터콘은 1년 전(2005년) 건설 하도급 회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데려 온 80명의 북한 노동자의 일부를 투입해 ... 프리모르스키(Primorsky) 지역에 두 곳의 25층짜리 주거용 건물과 크라스노셀스키(Krasnoselsky)에 9층짜리 건물을 건설하였다. ... 이번 달(2006년 10월)에 벽돌공 50명이 북한으로부터 도착할 것이며 몇 달 안에 100명이 더 올 예정이다. 인터콘은 북한 노동자들을 덕분에 매출이 네 배 늘어났으며 그들을 추가로 건설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sup>57)</sup>

위 보도와 조사단의 현지 관계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인터콘과 협의한 북한 측 회사는 ‘평양’이다. 이 회사가 처음 데려온 북한 노동자는 700명이며 이듬해 쿼터를 1,000명으로 300명 늘리기로 양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8)</sup> 하지만 양자 간 건설 협력 사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2007년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던 다른 현지 회사 페트로-스티물(Петро-Стимул)이 구체적 계획안까지 당국에 제출했지만 2008년 러시아 경제위기로 연기되었다.

이 무렵에 처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업 등록을 한 북한의 건설 회사가 나타난다. 2008년 말에 등록된 ‘강성’이다. 현지 신문에 게재된

57)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구팀과 만난 K 씨의 증언(2017.4.23.)에 의한.

58) “Кореяцев привезут строителям под заказ(북한인들 예약에 의해 건설에 참여 예정),” <<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 2006.10.10, <[https://www.dp.ru/a/2006/10/10/Korejcev\\_privезut\\_stroite/](https://www.dp.ru/a/2006/10/10/Korejcev_privезut_stroite/)> (검색일: 2017.5.15.).

59) 이와 관련하여 수도 건설이 2002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세워졌다는 증언이 있는데, 대외건설 산하의 ‘평양’은 건설 진출을 위한 타진 역할로 먼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건설회사 간부의 언급처럼 1995년 이후 약 10년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상당한 건설 붐이 일면서 노동자 수요가 늘자, 회사들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심지어 갈취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합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sup>60)</sup>

인터콘사와 1년 반 이상 접촉했던 북한 회사가 ‘평양’이 아니라 ‘강성’이며 처음으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현지 조사 결과 ‘강성’은 2006년 이후 현지 기업들과 북한 노동자 파견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온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처음 출현하고 또 그들의 활용방법이 바뀌는데 북한 지도부의 노력보다 현지 노동시장의 상황과 변화가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인당 1,000~2,000 달러로 추정된다.<sup>61)</sup> 2009년은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적 불경기의 여파로 러시아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질적으로 우수하고 통제가 잘 되며, 임금이 싼 노동력으로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 임금은 월 30 달러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 노동력을 점차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sup>60)</sup> “Корейцев привезут строителям под заказ(북한인들 예약에 의해 건설에 참여 예정),” <<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 2006.10.10, <[https://www.dp.ru/a/2006/10/10/Korejcev\\_privезut\\_stroite/](https://www.dp.ru/a/2006/10/10/Korejcev_privезut_stroite/)> (검색일: 2017.5.15.).

<sup>61)</sup> 위의 기사.

### 3. 최근 북한 건설노동자 활동의 배경과 현황

2014년 이래 국제 유가가 하락한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산유국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으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북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2018 월드컵 준비를 위한 공공건설 부문과 일반 건설 수요가 계속해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6년 러시아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쿼터(21만4,000명 규모)를 약 1/3이나 줄였지만 모스크바는 6,000명,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만7,500명을 배정하였다. 러시아의 한 대표적 언론은 201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할당된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1만2,400명인데 비해 2016년에 5,000명 이상 증가한 것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특별 허가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sup>62)</sup>

2017년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같은 공공 건설 수요의 부분은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2016년 290만 평방미터 건설이 승인되었고, 2017년 300만, 2018년 320만, 2019년 340만 평방미터의 건설 계획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어서 건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63)</sup>

다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 시장은 연해주나 사할린 등 지방 도시들과 차이를 보인다. 즉 대도시는 신규 건설 수요 이외에 다른 건설 시장에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수

<sup>62)</sup> “Квот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урезали на треть(외국인 노동자 쿼터 1/3 감소되다),” <<Известия>>, 2016.2.5, <<https://iz.ru/news/603300>> (검색일: 2017. 7.8.).

<sup>63)</sup> 이에 대해서는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상트페테르부르크 정부),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а 2018 год и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9 и 2020 годов*(2018년 및 계획 기간인 2019년 및 202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회 및 경제 발전 예측),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16, сс. 31~32를 참조.



도급 도시는 개별 인테리어 작업 수요가 많지 않다. 아파트 내 개별 세대들의 주택 개조는 이미 붐이 지나갔으며 소규모 별장(다차) 등의 건설이나 수리 분야에서 수요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단을 꾸리는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규 건설 사업 분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다. 소규모 작업조별로 일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하청을 수주하는 방향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건설노동자들이 개별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청부' 일거리가 사실상 막혀 있으며 사업단 일거리를 수행하는 '집체' 활동을 장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016년 제니트-아레나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노르웨이 축구 잡지 *Josimar*는 북한 노동자가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지만 구체적인 세부 실상까지 알리지는 않았다. 이 잡지는 북한 건설노동자들이 경기장 근처 컨테이너 시설에 거주하면서 아침 7시에서 밤 12시까지 노동한다고 폭로하였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사실들은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전체 노동자수가 매일 1,500여 명이며, 여러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했고 북한 노동자들은 9월~11월에만 투입되었다는 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한 개발사 'D'사와 'S'사가 각각 60명과 50명을 파견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들은 약 3개월 동안 미장과 도색 작업에만 참여하였다.

건설 노동자들이 컨테이너에 시설에 거주하며 노동하는 것은 러시아 지역에서 지극히 일반적 현상이다. 노동자들은 출퇴근과 생활비 부담이 없는 현장의 거주 시설을 선호한다. 음식이나 문화적 차이로 여러 국적의 노동자들과 같은 숙소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끼리 생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1,500여 명의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은 지정된 숙소에서의

단체 생활로 관리 감독을 받는 것보다 관리자의 시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현장 숙소 생활을 선호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꼰떼나’라 부르는 숙소 내부에는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난방이 되며 식사는 공동 식당을 이용하거나 음식이 맞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역시 노동 현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노동자처럼 장시간 노동하지 않는다. 현장 노동자 A씨에 따르면 ‘우즈벡, 키르기즈 출신 노동자들은 저녁 5~6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10~12시까지 일했다.’<sup>64)</sup>

사망한 북한 노동자는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2016년 8월 이후 연말까지 사망한 노동자 4명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역시 북한 노동자가 특별히 피해를 더 입은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 시장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아니다. 문제는 제니트-아레나 경기장 건설에서 몇 단계에 걸친 하청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이 과도하게 낮거나 제때 지불하지 않는 부당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7년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노동력의 규모는 전체 노동시장의 25% 가량이다. 봉급은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이 1.5만 루블부터, 우크라이나 출신자는 2만 루블부터 시작한다. 북한 노동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2017년 1월 1일자로 적용된 월 최저임금 1만6,000 루블 이상을 받도록 돼 있다.<sup>65)</sup> *Josimar*를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90%를 국가에 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100명을 고용한 러시아 회사가 연말까지 600

<sup>64)</sup> 북한이탈 노동자 A씨와의 면담(2017).

<sup>65)</sup> 이 금액은 2016년 대비 37% 인상된 것이다.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ред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сократилось в Петербурге до 25%(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이민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수 25%까지 감소),” *Tass*, 2017.8.9, <<http://tass.ru/obschestvo/4472497>> (검색일: 2017.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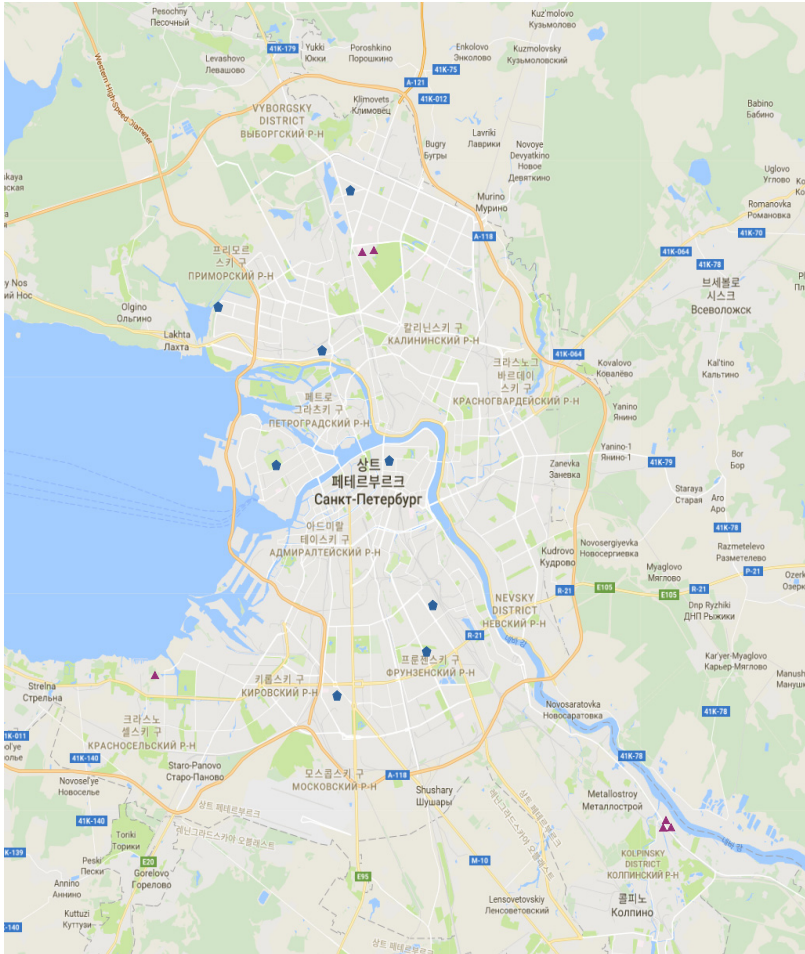
만 루블을 지불할 예정이라면서 각 개인별 하루 일당이 600 루블인 것으로 추정한 보도를 근거로 계산하면 실제 북한 노동자 한명이 받은 일당은 약 10~12 달러 수준이다.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월 300 달러를 넘지 못하는 액수다. 북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비하면 이들의 수입은 최저임금의 5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 4. 북한 건설사업소 현황

2017년 봄까지 북한 노동자들은 <그림 III-1>과 같이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북쪽과 남쪽 건설현장에서 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7년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주로 활동하는 북한 건설사업소(건설회사)는 ‘강성’과 ‘평양’ 두 곳이며, 그 외에 15개 사 정도(지부사 포함)가 더 있다.

이들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 구인광고에 따르면 건설조립공, 미장공, 벽돌공, 타일공, 용접공을 모집하며 급여는 월 1만 7,000~1만8,000천 루블 수준이다. 현지 조사 결과 같은 직종 건설노동자의 통상적 임금 수준이 3만5,000 루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인광고의 급여는 러시아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넘는 선에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1 등락처 기준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북한 건설사업소의 위치



\*참고: ▲ 주요 회사, ■ 협력 또는 위장 회사

\*지도출처: 구글지도, <<https://www.google.co.kr/maps/@59.9528133,30.3942734,11z>> (검색일: 2017.11.28.).

\*자료: 연구자 작성

사진 III-3 강성, 목란, 부흥의 사무소 및 기숙사가 위치한 건물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북한 건설회사 본부 가운데 하나인 ‘강성’은 우스찌-이조르(Усть-Ижор)에 3층 건물을 임대해 입주해있다. 대표자와 통역 운전수 등 10여 명이 거주하는 이 건물은 현지인 소유로 강성은 2015년 무렵까지 매월 1만 달러를 임대료로 지불했다고 한다.

이 건물에는 한 방에 10명씩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으며 집체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였고, 총화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각 방은 작업 반별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하루 숙박비가 3달러 정도인 이곳에 머물기보다 일이 있는 한 현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큰 회사 ‘대성(태성)’은 페테르고프 거리(Петергофское шоссе)에 위치하고 있다. 한 건물의 5층을 임대하고 있으며 ‘평양’의 주소지로도 쓰고 있다. 150~2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현재는 거의 사무실로만 쓰이고 있다. ‘평양’의 인력모집 공고에 따르면 이 회사도 1만6천 루블~2만 루블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고 있다. 공식적인 기업 자료에 따르면 평양은 수익이 있으나, 대성(태성)은 실적이 없는 회사다. 그러나 대성(태성)은 곧 평양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

사진 III-4 주소지에 평양, 대성 등이 등재돼 있는 건물의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평양의 대표로 등재돼 있는 A씨는 2016년에 또 다른 건설회사 'L'을 설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L'사 등록주소지에는 'L'사가 아니라 'R'이라는 'OOOO 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사와 같이 가공의 이름을 갖는 몇 개의 회사들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면서 건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편법은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주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회사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를 파견할 때도 이 같은 유령회사들을 활용한다. 가령, 실제로는 대성(태성)이 인력을 파견하면서 'L'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식이다.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사업소는 '룽라', '락원', '금표', '평양1건설', '수도건설'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근 8건설까지 모두 8개의 사업소가 설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모스크바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 이외에 봉제공장, 음식점, 상점 등에서 일한다. 모스크바 지역 피복공장 등에 북한 노동자가 진출했다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으나

본 조사에서 현지 인력 송출업체 관계자를 통해 구체적 파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16년 하반기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보안 점검이 강화되면서 2017년 4월의 현장 조사 당시에는 북한 노동자를 거의 목격할 수 없었다. 개별적인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식품 등의 구입도 간부들이 하는 상황이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 IV. 러시아 대도시 북한 노동자의 삶과 고통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북한 주민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에서 해외 파견 노동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보다 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파견지가 대도시일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북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개인의 자유를 비교적 더 많이 만끽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돈을 많이 벌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의 대도시에 파견될 경우에는 북한 노동자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러시아 대도시의 경우 북한 당국의 감시체계 및 러시아 정부의 통제가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는 곳이어서 이곳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여타 중소도시 파견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더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감시체계가 치밀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업소 내 관리자의 지위와 권한도 막강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적인 착취 및 비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대도시 여건상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료가 높아 시설과 위생이 불충분한 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사업소에서 받는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순응하거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데 때로 작업장을 탈출하는 극단적 상황도 발생한다. 이처럼 대도시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은 러시아 내 다른 지역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주요 인터뷰 대상자 심층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러시아 대도시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재구성하고 분석했다. 주요한 인터뷰 대상자는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최근 러시아 대도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sup>66)</sup>, 러시아 대도시에서 일하는 작업

장 이탈 노동자(산토끼), 북한 노동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인, 러시아 대도시에서 실제 건축회사를 운영했던 건축설계사, 경찰에 연행된 북한 노동자들의 통역을 맡았던 고려인(한인) 통역자 등 북한 노동자와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이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대도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총체적으로 재현해보고자 하였다. 본 장의 서술에 직접 인용된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략적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주요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순번	이름	성별	연령	신분	출신지	기타
1	A	남	50대	북한이탈주민	평양시	모스크바 파견 건설노동자 출신
2	B	남	40대	북한이탈주민	평양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파견 건설노동자 출신
3	C	남	40대	북한이탈주민	평양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파견 건설노동자 출신
4	D	남	50대	작업장 이탈 노동자	함경북도	벌목공으로 아무르주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작업장 이탈. 현재 대도시에서 활동
5	E	여	50대	중국 조선족	중국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시장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호텔 조리사로 근무
6	F	남	50대	한국인 건축설계사	한국	2002년~2012년까지 모스크바를 드니다며 건축회사 운영
7	G	여	60대	한인 통역자	사할린	모스크바에서 한국어/러시아어 통역

또 본 장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쓰는 다양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용어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66)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탈북한 연도는 최근 1~3년간으로 신변 보호상 정확한 연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표 IV-2 북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의미

순번	용어	의미
1	청부	러시아 회사와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개인 가정집의 도배나 내부 수리를 하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들은 '인테리어'라고도 부른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각 관리자들이 개인적으로 일감을 얻어온 후 노동자 중에 실력이 있고 작업장을 이탈하지도 않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 청부조를 편성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다.
2	대상 노동	대상노동이란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러시아 파견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청부라 불리는 개인적인 노동이 아닌 북한 사업소(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 회사(주로 러시아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 및 임금 관리는 주로 북한 건설사업소에서 맡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고층빌딩 건설 등에 다수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체노동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국가대상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의 관리자가 러시아 회사와의 계약 이외에 개인적으로 일감(청부)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청부보다 파견 인원이 많고 청부를 의뢰받은 관리자의 감독 아래 일을 하게 되므로 이를 집체노동 혹은 국가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총화	총화는 사업소 노동자 및 관리자들 전체가 모여 각자의 업무와 공·사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러시아 건설 사업소의 경우에는 크게 당생활총화(생활총화)와 계획분 총화(작업반 총화), 연간총화로 나뉜다. 당생활총화는 파견된 노동자들의 사상교육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행사이며 작업분 총화는 노동자들의 수입과 계획분을 점검하는 회의이다. 이 두 총화는 별도로 열리는데 당생활총화는 매주 1회, 계획분 총화는 매월 1회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생활총화의 경우 사업소의 상황에 따라 매달 1회 정도로 내부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연간총화는 매년 11월경에 열리며 중간관리자와 노동자들이 모여 1년치의 수입과 지출 및 계획분을 계산해서 확정짓는 행사이다.
4	재쑤생	과거 러시아 지역을 '쑤련'이라고 부르면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가 북한에 돌아온 사람을 뜻한다.
5	탕생	외국에 파견된 경력에 따라 불리는데 1번 파견된 경력이면 일탕생, 2번이면 이탕생 혹은 두탕생, 3번이면 삼탕생 혹은 세탕생으로 부른다.
6	생대/구대	해외에 파견되어 1년이 넘지 않은 노동자들을 생대라고 하고 그 이상 된 사람들을 구대라고 한다. 때로 생대라고 하기도 어렵고 구대라고 하기도 어려운 중간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반(半)구대'라고도 한다.

## 1. 해외 송출과정과 파견지 선택

북한에서 해외 파견을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에 일단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대외건설지도국<sup>67)</sup> 산하 사업소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파견될 노동자의 인원은 원칙적으로 귀국하는 노동자 인원과 비례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파견 지역의 인원과 귀국하는 지역의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대거 파견됐다가 귀국한 사람들이 많다.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재쑈생, 탕생<sup>68)</sup> 등으로 불리는 귀국 노동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려 노력한다.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근거로 수입이 많고 근무 조건이 좋은 곳으로 파견되기 위해 관리자에게 뇌물을 쓰기도 한다.

과거 근무 희망지를 선택하는 주 기준이 기후였기에 열병에 걸리기 쉬운 중동<sup>69)</sup>보다 북한과 기후가 비슷한 러시아를 많이 희망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견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더 복잡해졌다. 물론 ‘러시아 어느 지역을 가야 돈이 제일 잘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업소 내에서 어느 연줄을 동원할 수 있는지, 청부가 처음부터 가능한지, 비교적 사업소 분위기가 자유로운지, 사업소 지배인의 성품이 어떠한지 등 매우 자세한 정보에 기초하여 파견지를 선택하고 지원한다. 이때 노동자들이 가진 정보가 비슷하기 때

---

67) 대외건설지도국이 통합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는 각 성의 대외건설사업소에서 해외 파견을 담당했다.

68) ‘재쑈생’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을 뜻하며 ‘탕생’은 해외 파견을 몇 번 다녀왔는가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다. 한번 파견은 ‘탕생’ 혹은 ‘일탕생’, 두 번은 이탕생 혹은 두탕생, 세 번은 ‘삼탕생’, ‘세탕생’과 같은 식으로 불린다.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두탕생, 세탕생 이상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였을 것으로 평가하며 그만큼 파견된 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69) 아랍지역은 전통적으로 기후 때문에 파견지역으로는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 밀주 제조 및 판매로 수입을 올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기 있는 지역이 되기도 했다.

문에 좋은 조건의 도시로 파견되려는 경쟁이 심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기 지역은 50~300 달러, 영연방 국가인 몰타공화국(Malta)과 같은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1,000 달러까지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어야 파견될 수 있다고 한다.<sup>70)</sup> 아래 A씨의 사례는 돈을 많이 주는 곳과 연줄이 닿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파견지를 선택한 경우이다.

연구자: 파견될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A: 본인이 선택해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 안 할 때는 못 할 때 ... 선택하려면 간부과에 돈을 줘야 되단 말입니다. 가령 행선지가 러시아뿐이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또 수 십 개 도시 아납니까? 블라디보스톡도 있지 하바롭스크도 있고 사할린도 있고 예카찌리나(상트페테르부르크)나 무슨 뭐 러시아에 각 도시 큰 도시는 다 조선사람들이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 북한에서는 제(저) 나갈 적에 어떤 방식으로 행선지를 고르냐하면 “어디 가야지 돈이 제일 잘 되는가.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주는가.”

연구자: 제일 중요한건 돈이고 ...

A: 첫째.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도 한 가지 원리로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서 열심히 제가 일 잘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는 줄이 있어야. 그렇게 하고 간부가 당비서든 지배인이든 무슨 보위원이든. 담당보위원이 매 사업소에 보위원이 한 명씩 다 있는데, 또는 그 밑에 직장장이라도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기를 쓰고 거기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몰라도 친척의 소개, 어느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라도 어쨌든 조금 인연을 만들고 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일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돈을 더 받죠. 또는 더 받던가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자기가 그 바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저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소개서를 가지고 가면, 왜냐면 그 소개서 자체는 “이 사람 잘 돌봐주요.”하면 그와 연결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딱 걸친 사람이 부탁하니까, “이 사람

<sup>70)</sup> 최근 제일 인기 있는 지역으로 50~60명 정도만 파견되며 주로 숙련된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탁 들어줘야 되겠군” 그런 걸 다 안고 간단 말합니다. 그러다나니까 난 어디 가야하는데 하고 목적을 정하면 가만 있으면 보내줍니까, 안 되지. 말로만 해서 또 안 되지요. 뭐. 이거 뭐 깎아야지, 돈 줘야지만 되는데, 그것도 작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선수가, 거기에 경쟁자가 많다 할 때는 단가가 높고. 뭐 별로 가겠다고 사람 많지 않을 때는 단가가 낮고 한데, 작아서 50달러 많아서 300달러. 최고 그 제일 좋다고 가는 데는 1,000달러까지 줘야 되요.

집체노동 혹은 대상노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청부를 할 수 있는 곳도 인기 있는 지역이다. B씨는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할 때 과거와 같이 단순히 개별적인 청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세한 정보교환을 통해 파견 후 바로 청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3년 집체노동을 하고 나서야 관리자들이 청부를 수락해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

B: 다른 사람들이 파견됐다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 파견됐나?” 물어보고 “거긴 어드렸나?” 물어보면 다 말하거든요. 우리 여기는 뭐 힘들고 자기는 후에 탄 데 가겠다고는 등 ... 사람마다 서로 와서 정보교환 하는 게 그렇게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이번에 여기 가서 돈 얼마 못 벌었다. 이제는 돈 좀 투자해 가지고 탄 데로 가겠다.”든가 ... 그 지역, 사람들마다 들어와서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데는 청부조가 좀 있고 청부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케서든 거기 가려고 하거든요. 돈을(벌려고) ...

연구자: 그 청부 얘기한 사람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B: 그저 대체로 보면 ... 옴스크더라. 거기도 있고. 제가 갔던 상트(페테르부르크) ... 네, 거기도 청부를 많이(합니다) ...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청부를 많이 하더라고 기본이.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사람들 말도 들어보니까 뭐 대상 들어왔다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있을 때도 청부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자: 사할린이나 올라지(블라디보스토크)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B: 올라지 같은 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요. 거기 뭐



5개 건설 ... 5개 건설사업소가 있는데, 다 그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자: 거기는 오히려.

B: 네, 거기는 딱 그저 닫긴(닫힌) 구역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부 나간다고 하면 거의 한 3년을 그 대상 ... 말하자면 닫긴 구역 안에서 일해야 한답니다. 일을 해가지고 인정. 말하자면 회사도 그렇고 내가 뭐 3년 동안 이만큼 일했다 하면 “그럼 넌 나가서 돈 좀 벌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시간을 주는 그런 게 좀 있답니다. 그런데 청부조가 대개는 또 이렇게 뇌물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옷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고이는 그런 거 있죠. 돈을.

개별적인 청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외에도 개인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지, 지배인의 품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파견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C씨는 먼저 해외로 파견되어 나간 노동자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파견될 곳의 지배인과 관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파견지를 선택하였다.

C: 각 조별로. 조별로 일감 찾으라 해가지고 한 5~6명, 그저 10명 이렇게 조별로 일감 찾으며 다닌다는 소리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그만 데 나가게 되면 그래도 좀 돈도 좀 벌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도 좀 만끽할 수 있겠구나. 자유나 좀 나가서 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D도 시에 돈 100달러 주고서 나왔지요.

연구자: 그러니까 약간 좋은 지역의 기준이 청부를 할 수 있고 자유가 좀 있다. 이게 좋은 건가요?

C: 네, 그카고.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두 번째 조건이 사장이 도적놈인가 도적놈 아닌가. 같은 도적놈이지만은 민한<sup>71)</sup> 도적놈인가 민한 도적놈이 아닌가. 로동자 새끼들 조금 돈 쥐어주는 놈인가 아니면 제 배때기만 거둬 넣는 놈인가. 이게 기준이죠. 간부새끼들 그 지배인이 조금 승냥이인가 여우새끼가 하는 거. 여우새끼한테 가겠다 그러지 승냥이한

71)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테는 안 가겠단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정보들을 그 아낙에서 로동자들끼리 다 공유하니까. 먼저 번에 간… 그리고 대체로 알죠. 먼저 번 가서(먼저 사람이 파견 가서) “내가 돈 되면 전화해 줄게.” 그렇게 하고 색시한테 편지 들여보낼 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라. 여기 도적놈 판이다. 지배인 새끼 도적놈 새끼다.” 하고 편지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엔 “아 저씨 거기 오지 말래요.” 하게 되면 “야, 여기 아니로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데 탐문하고. 그 다음에 우린데 작업소장이 뭐 그래도 돈 조금 쥐어주는 작업소장이고 로동자들 좀 생각해 준다 하게 되면 편지라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간 부과에 가서 돈질해서 나 여기를 좀 가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저 그렇게 그러다나니까 그런 행선지를 좋아하죠.

이처럼 해외 파견 노동의 경험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견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파견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해외 파견 노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파견을 경험하고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파견 노동의 어두운 실체가 점차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부터는 해외 파견 노동이 고생만 하고 돈벌이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파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로 여겨졌던 대외건설지도국에 지원하는 노동자가 다소 줄기도 했다.<sup>72)</sup>

연구자: 건설노동자 중에 대외건설지도국 지원자가 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C: 네.

<sup>72)</sup> 2014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합병과 서구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위기와 함께 달러 대비 루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북한 노동자들은 자국에 송금할 수 있는 달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과거와 같은 높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러시아의 2014년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러시아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응정책: 2008년과 2014년 경제위기의 비교분석,”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를 참고할 것.

연구자: 그게 평양 쪽에 좀 건설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평양에서 건설하는 거가 많아져 갖고.

C: 그건 ... 그건 둘째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원인이 나가면 노예처럼 일한다는 거 이젠 다 입소문 퍼졌으니까, 첫째 원인이 ...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소 설립 목적 자체가 건설판에 끌려 다니는 목적 자체가 아니고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게 목적이고 국가에 돈을 밀어 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 끌려 다니는 거는 현재 기업소 유지를 위해서 끌려 다니는 거고. 기업소 설립 목적 자체는 노동자들 해외 보내서 돈 빨아들이는 목적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자가 작아진(줄어든) 원인이 노예처럼 일해 ... 이젠 돈벌이 이젠 안 된다.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대외건설사업소 다 지원 안 하니까.

해외 파견 노동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엄격하기만 했던 북한 당국의 노동자 해외 파견 기준<sup>73)</sup>도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파견될 노동자가 형제간이라면 형제간에 서로 의지해서 탈북할 것을 염려해 형제 중 한 명만 파견하던 것을 이제는 형제간이라도 대륙이 다른 지역에 파견될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 등 여러 완화된 기준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 2. 북한 사업소 체계와 감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의 대도시들은 극동 연해주나 사할린의 중소도시들과 다르게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을 위한 각종 국제구호단체,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비롯하여 한국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 및 관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노동

<sup>73)</sup> 예를 들어 '파견될 노동자에게 북한에 남아 있을 자식이 꼭 있어야 하며,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이 없어야 하며, 8촌까지 교화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야 한다' 등이다.

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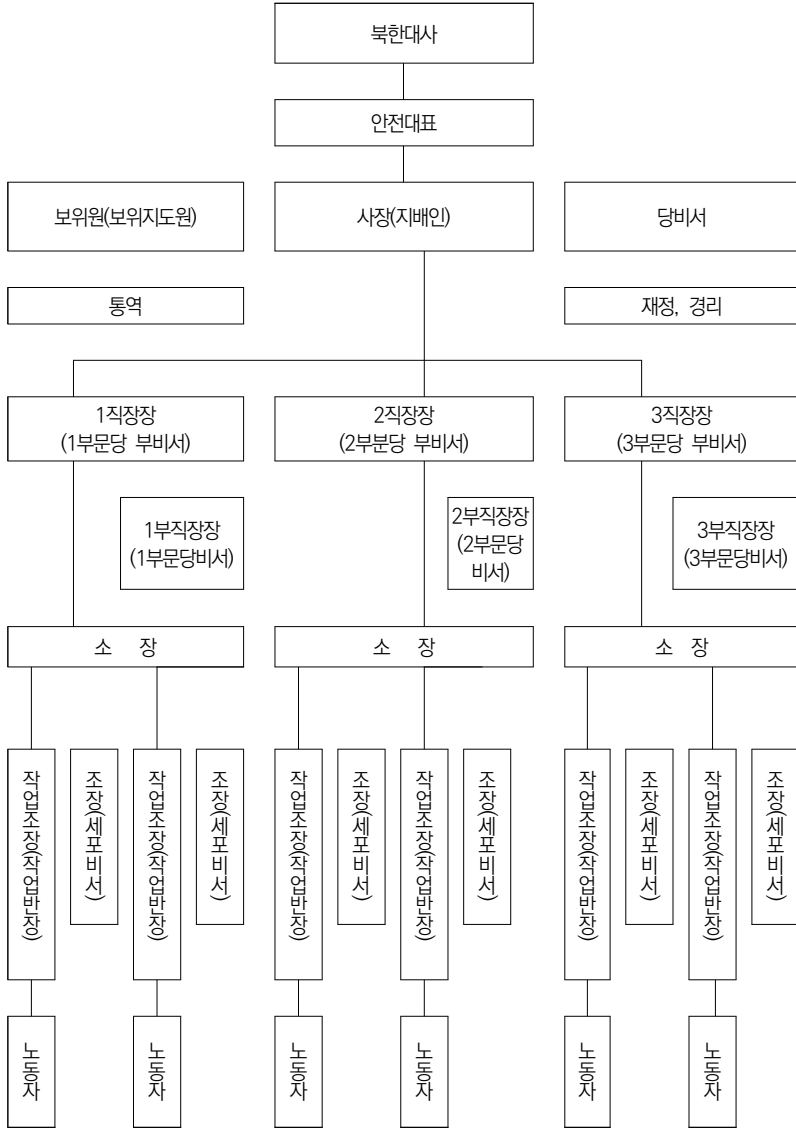
실제로 모스크바의 경우 2차례의 조사기간 동안 사할린의 노동자들처럼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노동자들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웠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였다. 이것은 수도인 모스크바가 가장 심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대도시 북한 건설사업소의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직장' 체계로 한 개의 사업소가 2~4개의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큰 규모의 대상건설을 맡는다. 두 번째는 '작업소' 체계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설을 맡을 때 이루어진다. 모스크바의 경우 주로 직장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는 이 두 체계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 가. 모스크바의 북한 건설사업소

모스크바에는 '릉라', '락원', '금표', '평양1건설', '수도건설' 등 5개 이상의 북한 건설사업소(회사)가 있으며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이 사업소들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한다. 대사관에서는 안전대표가 있어 모스크바에 있는 각 회사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사업소는 200명~400명 정도의 관리자 및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지배인), 보위원, 당비서, 직장장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IV-1 모스크바 각 건설사업소의 체계도



출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작성.

각 관리자들은 행정적인 직급과 당적(당 직급)을 중복하여 가지고 있어 두 개 이상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노동자에 대한 노동 관리와 생활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소에서 직장장인 경우 행정적인 직급은 직장장이지만 당적은 부문당 부비서이며, 부직장장의 경우에는 당적이 부문당 비서로 되어있다. 행정적인 직급은 직장장이 높아도 당적으로는 부직장장이 더 높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관리직뿐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도 조장이 세포비서를 맡아 노동자들의 생활총화(당생활총화)를 담당한다. 각 사업소의 중요한 행사인 총화의 경우에도 철저히 이원화돼 있어서 지배인, 당비서, 보위원, 직장장들은 매주 대사관의 총화에 참석해야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작업현장에서 총화를 한다.

모스크바 지역의 건설사업소들이 연해주나 사할린 지역과 다른 점은 사업소의 관리와 실제 작업 부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점이다. 즉, 관리자들은 모스크바 대사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며 노동자들은 주로 사업소 내 직장장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진다.<sup>74)</sup> 따라서 모스크바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25명, 많게는 80명 정도 되는 직장원들끼리도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없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교류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사업소에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물론이고 같은 사업소 내의 직장원들끼리도 상호 교류가 없는 상태로 각각의 노동 현장에만 투입되는 것이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친해지기 시작하면 작업 현장이나 관리자에 대한 불만을 서로 공유하여 집단행동으로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sup>74)</sup> 노동자들은 이처럼 파견지에서 직장을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조합생활'이라 칭한다.

A: 1개 직장 인원이 한 번 한 자리에 다 모여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안 모여 봐요. 비공개입니다 그것도. 인원도 비밀입니다, 노동자들한테. 좌우간 어찌나 쪼였는지(조임을 당했는지) ... 내도 러시아 가서 깜짝 놀랐시오. 자기 직장 인원이 전체 몇 명인지도 이렇게 하고. 우리 직장 사람들 얼굴 한 번 다 모여서 보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연락하는 걸 철저히 엄금합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몇 명이서 일한다 할 때, 우리 세 사람 네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이 통하면 우리 그걸 알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라면 즉시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아야 멀리 멀리. 다시 만나지 못하게. 왜냐면 이렇게 가까워지면 서로 쑥덕쑥덕하고 뭔가 불평을 하던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 사람이 요 사람하고 가깝다 하기만 하면 될수록이면 또 갈라봐요.

## 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건설사업소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크게 총 3개 이상의 건설사업소(회사)와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 피복공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75)</sup> 대표적인 사업소로는 ‘제1건설’로 수도건설이라 불리며 약 3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수도건설연합사업소에서 파견되어 나왔으며 2002~2004년 경 처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개척하여 들어온 북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주로 대상건설을 많이 하여 모스크바와 유사한 직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북한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북한대사관의 지시를 받아 북한무역대표부가 각 사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건설’은 강성(450~500명) 혹은 목란대외건설이라고도 불리는 데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설립되어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개척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지배인, 당비서, 보위지도원 등 관리자들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하청<sup>76)</sup>을 받아와서 노동자들을 투입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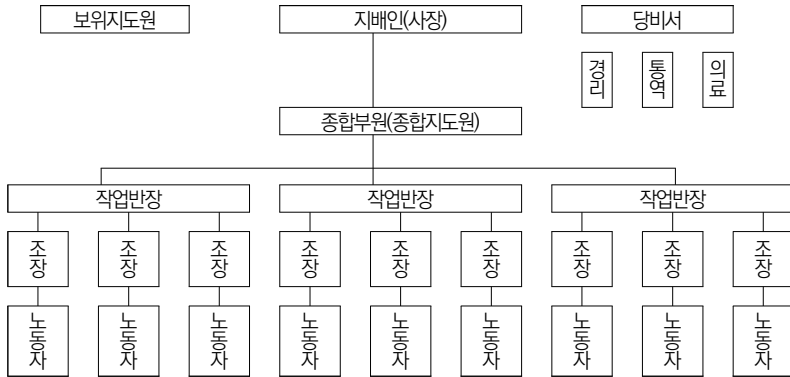
<sup>75)</sup> 개별 사업소에 대한 상세 내용은 III장을 참조.

하청을 노동자들은 청부라고도 하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4~5단계 거친 하청이 많다. 관리자들이 하청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별로 일감을 찾아 청부를 나가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현지 건설 회사들의 일감이 나오기 시작해 노동자들을 투입하기도 했다.

‘제3건설’은 공병건설이라고도 불리는데 2013~2014년경 설립됐으며 약 80명의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북한 인민군 공병총국 8총국에서 파견된 군인들이지만 사복을 입고 노동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2013년부터 W사 피복공장에 여성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최초 파견 당시 산토끼<sup>77)</sup>와 무역지도원이 북한에서 여성 인력을 수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sup>78)</sup> 2017년 기준 북한 여성노동자 약 86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작업안 전복 등 특수 분야의 의류 생산에 종사한다.

그림 IV-2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건설 사업소의 체계도



출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작성.

76) 북한 노동자들은 이것을 ‘청부’라고 한다. 청부는 이렇게 관리자들이 받아오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받아오는 것도 있다.

77) 별목공으로 파견되었다가 작업현장을 탈출하여 러시아에 떠돌며 노동을 하는 북한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다.

78) 자세한 과정은 IV장 5절 ‘나. 피복노동자’ 부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각 사업소의 감시와 관리체계는 제1건설의 경우는 관리를 심하게 하지만 2건설은 청부 형태가 많아 비교적 느슨하다고 알려져 있다. 조직의 체계는 <그림 IV-2>와 같으며 직장장이 없고 종합부원(종합지도원)이 지배인 다음으로 노동자들을 총괄 관리한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하청의 수주 가능성과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해 관리자들에게 번호를 붙여 부르는데 지배인(사장)이 1번, 당비서가 2번, 보위지도원이 3번이다. 각 사업소는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관리자끼리 상의하여 일주일에 한번 씩 해야 하는 당생활총화를 한 달에 한번으로 줄임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4년경부터 작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 3. 북한 노동자의 노동 및 수입

#### 가. 노동자들의 연간 수입과 계획분

러시아 대도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 체계에 속해 있어서 사업소에서 수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일만 해야 하며 개별적인 청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직장 체계의 노동에 투입될 경우 노동자들은 사업소와 러시아 업체가 계약한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수입과 계획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매일 평균 16시간 정도씩 노동하며 모스크바의 경우 매달 1,500 루블 정도(미화 26~30 달러)를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받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때로 개별 청부로 일을 할 경우 매달 50~150 달러까지 생활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0 달러 정도의 용돈만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용돈이 너무 적어 '담배 10갑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불평한다. 더구나 자신의 수입 중에서 계획분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 수 있는 돈이 얼마일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평균 계획분은 통상 매달 600~1,000 달러 정도로 추운 겨울에는 다소 낮아지지만 날씨가 풀려서 한창 일하기 좋은 계절에는 1,000 달러가 넘기도 한다.

매달 열리는 계획분 총화(작업반 총화) 때 노동자들은 이번 달의 계획분 금액 및 자신의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대강 구두로 통보받는다. 즉 직장장이 “(사업소에서) 계획분으로 이번 달에 바친 돈이 1,000 달러인데 너 벌어진 돈이 1,200 달러. 그러니까 나머지 돈 200 달러는 니꺼다.” 혹은 “계획분이 800 달러인데, 너 벌어진 돈이 600달러밖에 안돼. 미누스(마이너스) 200이다. 빨리 보충해야지 니 돈이 생겨.”라고 얘기해준다. 이 얘기를 듣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대해 머릿속으로 어렵짐작만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실제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알게 되는 때는 매년 11월에 열리는 연간총화 때이다. 모스크바 내 북한 사업소들의 경우 연간총화는 직장장과 노동자들이 모여 1년치의 수입, 지출 및 계획분을 계산하고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그런데 이 연간총화 때에도 개별 수입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장과 1:1 면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된다.

연간총화는 노동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장장이 호출하면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직장장과 면담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자가 들어가면 직장장이 지난 장부를 펼쳐놓고 어느 건설현장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각각의 내용들을 알려준다. 대개 처음 파견되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생대’들에게는 1년 수입 중에서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이 ‘미누스(마이너스)’라고 통보가 된다. 이때 직장장들은 직접적으로 미누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와 비교하여 이야기해준다. 즉 “그래도 동무는 기능도 높고 일을 많이 했어. 다른 사람들은 미누스 680인데 동무는 미누스 230이야” 등으로 현재 면담하고 있는 노동자의 성과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년간 다른 노동자들보다 성실하게 일했음을 칭찬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노동자들은 ‘회사가 1년 동안 매일 16시간 일 시켜먹고 한 달에 담배 10갑 살 돈만 주고는 미누스로 통보’하는 것에 상당히 허탈해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보로 연간총화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며 통보 시점부터 직장장과 협상이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미누스가 얼마가 있어도 좋으니 우선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줄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직장장에게 애원한다. 이때 직장장과 면담 온 노동자 사이에 연출이 없는 경우 직장장은 다른 노동자에게 꺾서라도 가족에게 돈을 보내라고 조언하면서 면담을 끝내고, 만일 연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단, 직장장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하며 값으라고 독촉은 하지 않을 터이니 일단은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라고 말한다.

A: (연간총화 때 직장장이) “너도 미누스다. 나가서는 그렇게 말해라. 그러나 조금 요거 준다. 이걸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돼. 그러나 내가 주는 돈은 니가 벌은 돈이 아니야. 이걸 너 물어야 돼.”다 이렇게 빗을 지어놓죠. 아주 고맙게 시리 감지덕지하게. “너도 미누스야. 니가 벌은 돈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주고 하는 게 이걸 내 돈을 주는 거야. 내 돈을 주지. 니가 좀 앞으로 일 잘해서 그제 나한테 벌어 바치면 좋고. 좌우간 뭐 내가 독촉은 안 하겠으니까. 정 바쁘는데 집에다 돈 좀 보내라. 그런데 니가 다른 사람한테 돈 꾸곤 해서 보내야지 내가 준 거로 해서 보내면 절대 안 돼.” 일대일 면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하는 면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직장장이 날 회유하느라고 나한테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구나 하는 거 알지.

직장장이 빌려주는 돈 역시 빛이지만 노동자들은 우선은 가족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고맙게 받게 된다. 또한 직장

장이 자신에게만 특혜를 베푼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하고 그 직장장에게 더 충성하게 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총화 때 생대와 구대를 구분해서 비밀리에 구대원들에게 임금을 조금씩 더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상쇄하기도 한다.

B: 우리 밑으로 생대들 계속 들어오니까요. 좀 오래 있는 사람들은 반장이 생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총화 지을 때 말하면서 돈 줄 때는 우리한테 그저 한 조금 더 줘요.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원(루블) 조금 더 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요. “야, 말하지 말라. 이걸 하도 우리하고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또 거기 또 말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대들이라는 게 생대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일할 줄 알기 때문에. 생대들은 와서 일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대들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반장이 많이 그, 그런 걸 좀 줬어요. 조금.

계획분을 제외한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개별적이어서 모두가 다른데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에 평균 50~100 달러 정도로 노동자들의 60% 가량은 1년에 600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의 3년간 수입을 합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3,000~5,000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때로 1만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도 있지만 러시아에 파견되어 2년 일하고도 오히려 마이너스 2,000 달러가 넘는 노동자도 있다. 노동자들은 실제 국가에 바치는 계획분이 170~180 달러밖에 되지 않는 데도 자신의 수입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관리자급에서 모두 떼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나. 청부

‘청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부는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노동계약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한 러시아의 대도시에서는 극히 드물다. 대도시에서 청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스크바 지역에서와 같이 직장장이 개인적인 연줄을 통해 단기간 사업으로 하청을 받아 개별 노동자들을 보낼 때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2건설 사업소와 같이 개척 초기 단계여서 러시아 건설회사와의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청부에 나서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등이다.

대도시에서의 청부는 정식 계약을 통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며 파견되는 노동자 역시 업무 능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조직생활에 잘 적응해야 하고 관리자와 관계도 좋아야 한다. 각 사업소에서는 청부에 나가는 사람들을 뽑아 비밀리에 ‘청부조’를 운영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청부조에 들어가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으며 관리자와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청부조에 편성된다.

A: (주변에서) “청부 나가면 돈 번다.” 그래요. 개별청부. 그러니까 한 달에 계획분을 얼마 낸다하고 제가 공구가방 둘러매고 제가 가서 계약하고 제가 가서 돈 벌고, 돈 바치는 거. 청부. 그 청부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청부조가 하늘의 별 따기고 힘들더만. 정말 그 청부조에 들어가려면 로어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엔 기능이 높아야 되고. 대체로 아무 일이나 다 완강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중요한 건 또 조직생활에서 제기되는 게 없고 이거 “이 사람들은 개별행동 시켜도 제기되지 않을 사람들이다” 하는 이미지가, 평가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 평상시에 생활총화 잘 참가하고 또 조직생활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맥관계. 이 직장장이 청부 내보내는데, 그 직장장이 가장 금싸라기처럼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하늘의 별따기더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청부조에도 조장이 있는데 대개는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많은 탕생이 맡는다. 청부조는 5명 정도로 인원이 작고 러시아 경험이 있는 탕생들이 많아 서로 돈이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조장이 일감을 얻어올 경우는 총 비용의 10%를 조장이 가져간다는데 동의한다. 반면 공사를 해준 집에서 공사불량에 대해 항의할 경우 그 공사를 맡은 노동자들이 재공사나 변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을 진다.

청부조를 건설현장에 보내는 관리자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관리자들이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부 계약을 한 관리자는 다른 여러 관리자들에게 청부로 얻은 수입의 일부를 뇌물로 주어야 한다. 청부조를 통해 현장에 나가는 노동자들은 사업소에서 대상건설 혹은 집체노동을 하는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수입이 약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상납해야 하는 계획분도 많아서 조장 정도의 직급에 있지 않는 한 큰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밖에도 사업소로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 중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외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건설노동자 중에 침을 놓을 줄 아는 노동자는 러시아 주민들 집으로 출장을 다니기도 하며 1회에 1천 루블(약 17 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4.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

대도시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6~8시에 현장에 나가 밤 10~12시가 돼서야 하루 작업을 마치는 일상이 일반적이다. 모스크바의 경우 노동자들은 주로 아파트 등 대형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내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통상 밤 10시 정도에 작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사업소에서 임대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다. 숙소와 공사장

간의 거리가 1시간 이상 더 걸리는 곳이 많아 샤워를 마치고 나면 밤 12시가 넘는다. 대도시여서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노동자 숙소는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건물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로 벽과 바닥의 타일이 깨지고 수도관이 녹슬었으며 밸브가 잘 동작하지 않고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식사도 작업현장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숙소의 장점은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이처럼 숙소가 부실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숙소 대신 작업 현장에서 자는 것을 선호한다.

작업 현장에서 자면 출퇴근 시간만큼 더 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건설회사가 마련한 컨테이너 간이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공사장 건축물 내부에 히터를 설치해 자기도 한다. 컨테이너나 공사장 건축물에서 생활할 때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목욕 문제이다.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지만 공사장 인근에 목욕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먼지 묻은 옷을 입을 채로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원래는 사업소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비싼 탓에 시 외곽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sup>79)</sup> 숙소로 사용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숙소에 가지 않고 공사장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관리자들도 역시 숙소에 노동자들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관리자들이 간혹 근무시간 중이나 퇴근 후에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주로 사업장 내의 컨테이너를 개조한 간이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4~6명 정도가 한 컨테이너에서 숙식한다. 이 컨테이너형 숙소(폰페나)는 유료이며 북한 노동자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

---

<sup>79)</sup> 시골의 외진 곳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대료가 40만 루블(미화 약 7,000 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르기스탄 출신 노동자들도 자주 이용한다. 실제 건설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형 숙소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C: 그러니까 그저 거긴 뭐 조선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로동자들 다 있죠. 그렇게 하고 러시아놈들 자체도 컨테이너생활 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는 놈도 있고. 다 자기 집이 있지만은 이렇게 휴간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 그저 건설장이라면 그 주변은 컨테이너로 뒤덮죠. 컨테이너 그렇게 많아요.

사진 IV-1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 임시숙소(좌)와 근접 촬영(우) 사진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외국인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느끼게 된다. 대표적인 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통상 아침 8~9시에 현장에 나오며 저녁 6시만 되면 작업을 종료한다는 점이다. 빠르게 작업해도 밤 10시에나 하루 작업이 종료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B: (외국인 노동자들과) 차이가 뭐냐면요. 일 강도(強度). 일 시간. 여기서 차이나지 생활하는 건 그저 비슷해요. 네, 야 네는 뭐 아침에 한 8시, 9시에 나갔다가는 저녁에 그저 6시면 딱 끝나거든요. 작업이. 그런데 우리 같은 건 그저 아침 8시부터 나가가지고 점심밥 먹으로 내려왔다 또 나가서 ... 밤에 보통 빨리 내려와야 10시고요. 그저 12시까지 ...



사진 IV-2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외출은 모스크바의 경우 사업소의 감시가 심해서 잘 하지 못한다. 식사는 내부에서 해결한다. 노동자들은 공사 현장 부근 시장에서 고기와 채소 등 식자재를 구입하고, 옷이나 신발 등 개인 물품도 구입한다. 노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대체로 육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축 부산물로 나오는 돼지기름과 껌데기를 사다가 조리해 먹기도 한다. 이 돼지기름은 러시아인들이 즐겨먹는 살로(Salo)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러시아 사람들은 먹지 않고 개에게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 돼지기름을 구입할 때 북한 노동자들은 정육점 주인에게 순대 만드는데 쓸 것이라고 둘러댄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돼지기름을 자주 찾음에 따라 정육점들이 기름을 따로 모아뒀다가 1kg 당 40 루블(0.7 달러 정도)의 헐값에 판매한다.

사진 IV-3 모스크바 주 아진짜바의 한 시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구입하는 돼지기름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지만 도시 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버리는 옷, 이불, 신발 등의 폐품을 모아두는 수거함인 ‘오물장’이란 곳에서 옷이나 가재도구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주민들이 뜸하게 다니는 밤 10시쯤 물건들을 집어오는데 가져온 옷들은 주로 건설현장 작업복으로 사용한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벼룩시장에서 중고 물품들을 구입한다. 벼룩 시장은 시내 여러 군데에서 열리는데 센나야, 라도가야 등에서는 북유럽에서 온 중고 박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물건들은 50~100 루블(미화 약 0.86~1.72 달러) 정도의 저가에 판매된다. 이밖에도 오제르나야 역 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벼룩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 IV-4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제르나야 역 근처의 벼룩시장



출처: 연구자 촬영(2017.2.)

## 5. 건설공 이외의 북한 노동자들

### 가. 개인 노동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는 건설노동자 외에도 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북한 사람도 존재한다. 주로 태권도 사범, 미술품 판매업자, 조각가, 의료인 등이다. 이들은 청부형태와 유사하게 개별적으로 일감을 찾아서 일을 해주고 대사관이나 무역대표부에 계획분을 상납하며 계획분을 제외한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IV-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칼애프레드릭 맥주·사슬릭 레스토랑(좌)과 그곳에 세워진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조형물(우)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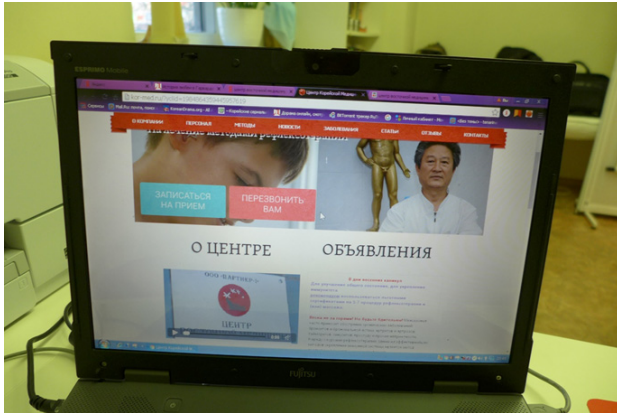
모스크바의 경우 북한 의료인들이 개인 의원 형태의 사업체에서 활동하는데 일반 주거시설(아파트)에서 러시아인과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실내는 한방 진료 받는 곳과 마사지 받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북한 의료인은 주로 한방 진료를 한다. 북한 의료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kor-med.ru/>)도 운영하는데 인터넷 공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현지인들조차 북한 출신 의사들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호기심에 간혹 한국인들이 가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러시아인이 시술하는 마사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진 IV-6 모스크바 내 북한 한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좌) 및 병원 내 광고문(우)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사진 IV-7 모스크바에서 운영하는 북한 병원 관련 홈페이지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된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고려인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돌며 북한에서 제조한 약을 판매하기도 한다. 북한 의사들의 부수업원인 셈이다. 이들은 대개 아내와 함께 모스크바에 오지만 자녀들은 고국에 남겨둔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는 혼자 모스크바에 왔다가 나중에 아내를 불러들인다고 한다.

## 나. 피복 노동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 노동자가 진출한 건설 이외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피복(봉제) 분야로 여성들이 일하는 점이 한국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북한 여성노동자가 활동하는 곳으로 확인된 W사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외에도 여러 곳에 공장이 있는 대형 업체다. 2017년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L주에 있는 W사 분공장(分工場) 등에서 북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복공장에 북한의 여성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은 2013년 8월경이며 2012년 말경부터 작업장 이탈 노동자(산토끼)와 무역지도원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D씨는 1990년대 말 러시아 아무르주로 파견된 북한 별목공 출신으로 별목 작업장을 탈출한 뒤 17년이나 러시아를 떠돌면서 생활한 전형적인 '산토끼'였다. D씨와 같은 일부 산토끼들은 러시아계 여성과 결혼해 처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각종 건설현장 및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한다고 한다. D씨의 경우 처남이 피복공장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동서인 D씨에게 북한 노동자 인력을 공급하도록 알선했다. D씨는 당시 안면이 있던 북한 무역지도원 및 건설사업소 관리자와 함께 북한의 여성 인력을 러시아에 들여오도록 추진하였다.

북한 노동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에서 인력 파견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것과 러시아에서 필요한 각종 허가서류를 법률 회사의 도움을 받아 구비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쿠틀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피복공장 노동자도 건설노동자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D씨의 수입은 주로 파견 노동자들 수입의 일부를 받아 발생한다. 노동자들의 수입은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우선 무역지도원과 D씨가 받아 일정 부분씩 나눈다. 무역지도원은 그 돈을 다시 나누어 노동

자들에게 지급하며 D씨는 인력을 도입하는데 들인 비용 등을 충당한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다. 노동 허가서류를 받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우선 D씨가 미리 충당하고 노동자들이 입국하여 노동을 시작하면 노동자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메우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시 제반 서류에 드는 비용은 2012년 기준 1만9,000 루블(약 616달러, 2012년 환율 기준) 정도였으며 매년 그 비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D씨는 2012년부터 노동자들의 쿼터, 노동허가증, 거주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북한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1년 비자만 발급되며 비자 만료 기간 안에 기한을 연장할 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에 입국을 허가 받은 뒤 수개월이 지나 입국하면 남은 몇 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으며 비자 기한 연장시 다시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비자를 받은 후 6개월이 흘러 러시아에 입국하면 나머지 6개월만 노동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시 발생하는 비용은 D씨가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인력파견을 제 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D씨는 북한에서의 행정 미비로 인해 노동자들 입국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비자만료 2개월을 남겨놓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D: 그 사람들(북한 여성노동자) 한 두 달 석달 그 다음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럼 오면 비자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1년치를 했죠? 6개월 후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비자를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만 9천(루블)에 1년치, 6개월치를 못했죠.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지나기만 하면 또 다시 만 9천(루블)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막 6달 7달 이렇게, 마지막에 한 사람은 2달치를 가지고 들어왔더라고. 기간 2달치를 가지고, 1년치를 받았는데, 그 기간 못 들어오고 있다가 2달이니까. 기간 짧아요. 그렇게.

연구자: 그렇게 되면 빨리 들어오라고 좀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D: 그런데 북한에서 안 보냅니다.

연구자: 누구한테 혹시 재촉을 하셨어요?

D: 재촉 했죠. 그 무역하는 사람한테. 계속...

연구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D: 이제 들어온다고 하죠. 계속 들어온다고. 계속 들어온대요.  
들어온다는 게 언제... 한 달 있다 들어오고 한주일 있다 들어오고.

북한 당국의 행정상 미비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적자가 쌓이자 결국 D씨는 피복회사 인력 공급 사업을 추진한지 2년 만에 자신의 업무를 법률회사에 모두 맡겨버리고 이 일에서 손을 뗐다.

사진 IV-8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피복회사가 제작한 상품들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피복 공장 노동자들은 주로 평양, 남포 출신의 여성노동자들로 초반에는 19세 이상의 미혼여성들이 많았고 2017년 현재는 30~40대 나이의 기혼여성들과 뒤섞여 있다고 한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로 제2건설(강성) 보위지도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Z 거리에 소재한 한 달 월세 4,000 루블(약 67~69 달러) 정도인 방 2개짜리 허름한 아파트에 8명씩 집단으로 거주하며 공장으로 출퇴근한다.

1인당 평균 수입은 매월 4,000 루블(약 67~69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회사의 임금정책으로 인해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W사의 경우, 원래 시간당 150 루블(약 2.5달러)씩 받기로 했으나 불량품이 나올 경우 그만큼 줄이도록 되어 있어 통상 시간당 150 루블의 50%~20% 정도(75~30 루블, 약 1.3~0.5 달러)만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파견되면서 발생한 대행비, 숙식비용, 계획분 등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늘려서라도 이를 보충하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피복공장 여성노동자의 근무시간은 평균 10~12시간에 달한다.

러시아 시장 경기가 침체되어 공장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 장시간 노동도 불가능하여 평균 6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거나 작업을 아예 쉬어야 해서 수입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들은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감을 구하기도 하고 간혹 호텔이나 식당에서 주방보조나 청소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건설노동자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개별적 ‘청부’인 셈이다. 주방 보조의 경우 통상 노동자 1인당 매월 1,000 달러 수입에 계획분 400 달러만 상납하면 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나 관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결국 거절을 하고 만다. 그 일을 하면 한국 손님들을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관리자들이 좀처럼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포장 박스 만드는 일 등 집단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은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 허락이 되지만 임금이 너무 적어 잘 성사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감시가 더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말에 외출이 허락되어 6인조로 나누어 시장을 돌아다니던 피복공장



여성노동자를 목격한 중국출신 한인 E씨<sup>80)</sup>는 이들이 겨울인데도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있어 보다 못해 자신이 입던 옷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 처음에 댕기던 6명은 이렇게 후에 보니까 야 이렇게… 앞에 서는 친한 것처럼… 서로, 서로 감시해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제가 딱 친하고, 친했어요. 제가 또 정말 옷이랑, 제가 진짜 안 입는 옷을 정말 좋은 거 많이 줬어요. 옷을 많이 줘… 한 번은 있지, 그때는 몇 명 잘 모르고 한 번 피퍽 봤는데 두 번째 장마당 올 때 12월 달에 추운 날에 얇은 거 하나 입고. 위에다 그냥 얇은 거 하나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제 옷이 있어요. 동복 진짜 털 있는 거, 진짜 좋은 거. ‘일할 때 입자’ 하다가 일할 때 입자면 진짜 비싼 건데 아까 우니까. 이거 입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날에 그제 임시 입으라는가 해서(하루만 잠깐 입으라는 것으로 알고) (여성노동자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입으라. 내 거저 주겠다”고. (여성노동자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 보니까 정말 옷이랑 너무 그러니까… 제 집에 있는 거. 제 친구들한테 가면 야 옷이랑 있으면 나 달라. 전부 다 달라. 그제 다 가져와서 줘요.

저임금으로 인해 생필품이 부족해진 여성노동자들은 간혹 사업소 관리자나 수입이 높은 건설노동자들과 어울리면서 쌀 등 필요한 물품과 용돈을 받기도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 지배인이 여성노동자들을 데리고 시내의 P 쇼핑몰 및 그 내부에 위치한 아쿠아랜드에 가서 자주 쇼핑과 수영을 즐긴 적이 있었는데 쇼핑몰 옆 건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북한 건설 노동자가 “우리는 담배피울 짬도 없이 일했는데 노는 사람은 이렇게 다닐 수 있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일이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북한 당국이 P 쇼핑몰과 아쿠아랜드에 북한 관리자 및 노동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한다.

<sup>80)</sup> 당시 E씨는 시장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17.4.)

#### 다. 작업장 이탈노동자(산토끼)

러시아의 대도시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뿐 아니라 과거 벌목공 시절부터 작업장을 이탈해 각 도시를 떠돌아다니며 노동하는 이른바 토끼, 혹은 산토끼가 존재한다. 이들은 대도시의 건설 현장의 후면부에서 건설에 종사한다. 오래된 산토끼의 경우에는 러시아 혹은 중앙아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살거나 위조 여권을 구입하여 생활하기도 한다. 이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장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러시아 전역에 약 2만 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도시에서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공사 단가의 절약 때문이다. 도심부 건축공사의 과정에는 거의 대부분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 인부들을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중국인들(중국 조선족 포함)이 재하청을 받는다. 중국인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해 비용을 줄인다. 도시 내 건축 공사는 소음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경찰이 나오면 체류자격이 없는 노동자가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에 걸리면 고용인이 건당 2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중국인 하청업자들은 경찰의 단속이 심한 대로면 전면부에는 정식 여권과 비자가 있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단속이 뜸한 후면부에는 산토끼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건축을 진행

한다. 이때 중국 조선족 중개업자가 북한 건설사업소의 소장이나 작업반장 등과 협상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투입한다. 산토끼 노동자는 별도 연락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모집한다.

F: 그런데 애들(중국 조선족)이 왜 북한 애들을 데려 오냐면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시끄럽잖아요. 민원을 낸단 말야.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경찰 부를 거야.” 이게 대부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다차(дача, 소규모 별장) 지역에 뭐 개발지에 집 짓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도시 안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소음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책임자 건축주 뭐 이런 사람한테 2만 달러의 벌금을 물립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연구자: 1인당?

F: 아뇨. 건당. 그러다보니까 여권, 비자가 불확실한 애들 썼다가는, 기술이 좋은 거 때문에 썼다가는 나중에 잘못 걸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반장만 여권 확실한 놈 딱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러면은… 연변 투면에서 온 중국 동포들은 북한을 드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북한 사람들과 만나 가지고 사람 필요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F: 산토끼를 쓸 정도의 일이나, 아니면 애네들(북한 노동자)을 쓰는 거 정도의 일이나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 큰길, 큰길가에 있는 프로젝트. 이거 차 많이 다니고, 경찰차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반드시 중국사람들 썼다가는 경찰들한테 뜯기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합법적인 어떤 회사 끌려고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이면도로에 저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100% 산토끼를 쓰거나 중국 사람 쓸 수 있죠.

연구자: 나와 있는, 노출돼 있는 곳은 중국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합법화된 북한 사람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F: 그러니까 경찰이 한 번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애들이 그 노다지(실적 혹은 뇌물) 딱 생각하고 왔는데 걱정 안했지. “야, 패스포트 다 갖고 와”(하는데) 없어요. 애들 사실은.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별목공들…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 파견) 건설노동자는 조금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건설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패스 포트는요. 원본들이 아니에요. 다 복사본인데, 복사본이라고 해도 이거는 원본과... 원본대조필한 도장이 찍혀 있고 그거를 비닐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노동허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경찰이 딱 와가지고 그걸 주면 워낙 그런 판이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넘어가요. 그냥. 그럼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없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대도시 건축 공사 현장에 가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 후면부에서 산토끼들이 노동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독특한 인력 충원 과정 때문이다.

## 6. 러시아 정부의 정책변화와 북한 노동자

러시아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오늘날까지 오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 제1단계는 1990년~1995년으로 국제이주에 대한 정책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대규모 ‘국제이주’ 현상에 직면한 러시아가 차례로 이주정책을 형성해 나간 시기이다. 당시 러시아 외교정책 전반에서 나타나는 친서방적, 자유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국제이주정책에 투영되었으며, 구소련 시민권을 가진 경우 러시아 이주가 거의 자유롭게 수용되는 ‘공급자 주도 정착형’의 이주정책이 추진되었다.

제2단계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1996~2001년이다.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친서방 자유주의적 대외정책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이주정책도 서구 방식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는 시기이다.

제3단계는 2002년~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통제적 이주 레짐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주정책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안정됨에 따라 불법 노동이주가 늘어나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81)</sup>

최근에도 통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앞서 II 장 3절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2014년 12월의 연방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노동 이민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 도입, 2015년에 시행된 복잡하게 강화된 새로운 노동허가 취득절차,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노동자 관할 업무 기관의 변화 등이 그 사례다.

러시아 정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차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대도시 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에 의한 강제 연행 및 추방도 증가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경찰에 연행된 북한 노동자들의 심문 및 재판 통역을 담당한 사할린 출신 한인 통역자 G씨에 의하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이유도 석연치 않을뿐더러 노동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G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 이민국의 의뢰로 통역한 두 사례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 모두 러시아 경찰이 북한 건설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쳐 북한 노동자들을 노동법 위반으로 연행한 경우라고 했다. 2015년의 경우 러시아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벽돌을 들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사진을 찍은 후 연행했는데 이 사진이 노동허가증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하지 않은 증거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러시아에 입국할 당시 노동허가증에 미장일을 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노동자가 목수 일을 한다든가, 목수 자격으로 입국한 노동자가 페인트칠을 한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016년에는 경찰이 2015년 사례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억지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연행 사유는 마찬가지로 노동허가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81) 김성진, “러시아 이주정책의 성격과 발전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4호 (2008), pp. 530~534.

G: (2016년에 통역하러 가보니까) 노동허가증은 미장해야 되는데, 미장원인데 목수일을 하더라. 또 이 사람은 목수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더라. 페인트칠 하더라. 그래 가지고 계속 다 이 사람들은 위반.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고 물어보잖아. “(원래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은) 벽돌 쌓는 사람인데 왜 그 당시에 목수일을 하고 있었냐?” 그 사람들은 “우리 (건설현장에) 나올 때는 거기서는 목수일만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이제 벽돌 쌓는데 벽돌이 안 오니까 뭐 무조건 멍 때리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돈 벌러 왔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탓에 경찰 단속 때 연행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한다. 더구나 2015년의 경우에는 경찰이 북한 노동자들이 하지도 않은 작업을 강제로 연출하기조차 했다. 결국 2015년에는 연행된 북한 노동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노동자 1인당 5,000 루블(약 90 달러, 2015년 환율기준)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추방까지 당했다고 한다. 2016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G씨가 통역 과정에서 대변해주는 한편 북한 사업소 관리자가 담당 경찰을 만나 관행적으로 처리한 덕분에 무사히 석방되었다고 한다. G씨에 따르면 연행과 심문, 구치소 수감,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들이 만연해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과 이민국에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G: (2016년에 북한 노동자들이 수감된 보호소에 갔을 때) 응, (수감자들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가” 하니까, “여기에 북한애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문 두드리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두드리겠지. 좀 열어보라고. 말 안

통하니까 사람들. 그래서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애들이 앉아 있어요. 젊은 애들인데. 그래 “지금 뭐 필요해서 문 두드리는가?” 물어보니까, (수감자들이) 인사하고. 자기들은 어제 왔는데 먹이지도 않고 물도 아무 것도 안 주고 이렇게 잡아놨다 하면서 그래서... 왜 사람들인데 암만 죄 위반해도 뭐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화장실 간다면 화장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관리자가) 열어주는데 어제 저녁 먹었을 건데 하고서. 저녁 먹었다 하는데 진짜인가 하니까, 아니라고 안 먹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지들끼리 러시아 사람 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 가차운데 가서 뭐 살데 없는가 그래서 가까운 데는 없고 어디 좀 가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물을 사줄까, 물이라도. 그러니까 물은 내 보내데.

(2016년 심문 과정에서) 그중에서 애들 하나 쓰러졌어요. 놀래가지고인지 뭔가 뭐 얼굴 새하얗게 돼 막 쓰러져... 내가 빨리 병원차 불러라 하니까, 애들이(북한 노동자들이) 아니면서 긴가하고 그렇게 한다고. 척 한다고. 아픈 척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픈 척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내가 보니까 젊은 애들이여. 그래서 내가 여기 땅이니까(평평한 곳이니까), 저기 옷(가져다) 여기 다 깔으라고. 깔고 여기 눕히려니까 눕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져 보니까 식은땀이 딱 났어 애가. 손도 차갑고 다 차갑고 죽어가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내가) 보라고 지금 다 죽어간다고. 무슨 척하는가고. 식은땀이 어떻게 척하면서 나는가. 그러니까 차 불렀어요. 전화하면서 불러가지고 의사가 왔는데, 와 가지고 뭐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애들... 그런 척, 이것도 또 그런 척 한대요. 내가 말했어요. 그런 척 안 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공기도 나쁘고 먹지도 못하고 안 그래도 비실비실한 애들인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렇게 더 못 먹고 하니까 이렇다. 우리가 나도 모르고 자기들도 모르지 않는가. 이 사람한테 무슨 병이 있는가. 속병 있는가 누구 모르니까. 지금 의사 불러 가지고 봐라. 의사 불러 가지고 한참 보더니 보면서 막 여기다 있잖아요. 약 하면서 그래 눈만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뜨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와서 남자가 막 볼때기 막 때리데. 정신 차리라고...

2015년과 2016년에 모스크바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경찰과 이민국에서 겪은 사례들은 연말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비리 경찰이 뇌물을 챙기려고 벌인 일종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서 정식 여권과 비자를 가진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찰이 검문을 하더라도 연행까지 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추어볼 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민국 업무 일부가 내무부 소관으로 이전되는 등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통제 강화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연행, 수감 및 추방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V. 결론: 평가와 전망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최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와 맞물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으며 제재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향후 입장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sup>82)</sup>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력뿐 아니라 미래 남북러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러시아의 상황과 입장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양 수도 지역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이주노동자 및 북한 노동자 정책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러시아의 구체적인 상황 및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삶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up>82)</sup> 대북 제재의 국제공조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도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서 주목을 끄는 나라는 단연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소련(러시아)은 이념적 동질성을 기초로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김정은의 집권 이후 새로운 단계의 밀착관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러 관계에서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가 향후 어떠한 입장에 설 것인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최근까지 북한 노동력의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음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7월 외교통상부 대북정책 담당 차관인 김기춘은 북한 노동력의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으며,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등의 업무는 2007년 8월에 체결된 임시노동활동에 관한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2016.9.29. 보도). 러시아의 이런 방침은 그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서부 시베리아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2명이 붕괴되는 골조에 압사당하는 안전사고가 터진 직후여서 더 의외라는 반응을 불러왔으며,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국면에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2017년 4월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뜻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입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꼽았고 (<<https://www.voakorea.com/a/3814876.html>> (2017.4.18.)) 이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극동개발부 장관에 의해서도 러시아에 있는 4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 “수는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서방 언론과의 회견 내용을 통해 재차 확인되고 있다. (“북한, 경제 제재로 대 중·러 협력사업 난관,” 『VOA』, 2017.8.29, <<https://www.voakorea.com/a/4004003.html>> (2017.8.29)).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기간제 노동이민의 역사는 시기적으로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요 무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었다. 6.25 전쟁을 전후하여 잠시 중단된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 범위는 임업 및 목재 가공업, 기타 산업부문에 확대되어 갔다. 특히 1967년 이래 1991년 소련 해체 시기까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소련) 송출은 기본적으로 벌목 분야에 집중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절에도 북한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창구를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농업과 건설 부문 등으로 확대하였다. 북한 노동자 파견 역시 건설 부문 진출과 더불어 극동 지역을 벗어나 유럽러시아 지역의 대도시들도 포함되었다.

2000년 7월 김정일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북러 간 경제협력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푸틴이 대통령으로 재등장한 이후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에서는 남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 내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을 지지하고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적인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을 선언하였고, 대내적으로도 외국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 노동자에게 특혜를 베풀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중심인 수도급 도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형식적으로도 보다 엄정한 집행의 모습을 띤다.

러시아 정책의 변화뿐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적 상황은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동한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업의 구조가 심화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북한 사업소의 강력한 감시체제, 그리고 개

별 가정의 수요 감소 등으로 극동 지역, 사할린과 같은 지역에서처럼 개별적인 청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추세이다.

모스크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흥 진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으로 약 2,0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피복 분야 등에도 노동력 진출이 이루어져 있으며 피복 제작 분야에 과거 별목공 출신의 작업장 이탈자(일명 산토끼)가 개입해 여성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새로운 활로도 개척해왔다. 최근 이들 대도시들에는 고려인 등 현지 한인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직접 현지 법률회사 등을 통한 대형 일감 확보 등 북한 사업소의 직접적인 진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의 공식화와 세금 납부 등을 요구하며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러시아 현지의 상황에 북한 사업소들이 대응한 결과이다. 동시에 현지 건설시장 상황이 인테리어 등 소규모 청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조별 수입 확보에 한계가 있어 대형 건설 시장에서 일부 분야의 하청을 수주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지 대형 건설사와의 하청업체로 협력하게 되면 경찰에 의한 노동자 감독 활동과 그로 인한 벌금 납부와 같은 부정적인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러시아의 정책변화와 같은 증충적인 상황과 맥락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의 북한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 체계 및 러시아 정부의 통제가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는 곳이어서 파견된 북한 건설노동자들 역시 여타 중소도시 파견 건설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더욱 박탈당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건설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조건 속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심한 착취와 감시를 당하고 있다. 감시체계가 치밀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업소 내 관리자의 지위와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관리자들과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적인 착취 및 비리가 더욱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대도시의 경우 건물 임대료가 높아 시설과 위생이 불충분한 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용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심각한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북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식은 주로 순응, 이용, 저항으로 나타나며 때로 탈출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도 표출된다. 이처럼 대도시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은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연구와 언론매체의 보도들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 및 대응방식, 러시아 내부의 이주정책의 변화 과정, 파견된 북한 사업소 및 노동자의 구체적인 경험 등에 입각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뿐 아니라 향후 남북러 경제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전망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찬홍. 『러시아 드림: 러시아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 신창훈·고명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 윤여상.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영형.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Seo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sh Studies, 2014.
-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 Безик И.В. Участик граждан КНДР в хозяйственном освоении совет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50-е начало 1960-х гг.). 2011.
- Дин Ю.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2015.

- Забровская Л.В. Россия и КНДР: опыт прошлого и перспективы будущего (1990-е годы). Владивосток, 1998.
- \_\_\_\_\_. Стратегия 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М.: Морской гос. ун-т, 2011.
- Кузин А.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1880-2005).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6.
-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а 2018 год и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9 и 2020 годов. СПб., 2016.



## 2. 논문

- 김성진. “러시아 이주정책의 성격과 발전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4호, 2008.
- 박지원. “러시아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응정책: 2008년과 2014년 경제위기의 비교분석”,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
-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 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
- \_\_\_\_\_.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집 2호, 2007.
-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대북제재 이후, 북·러 경제협력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덕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중소연구』, 제40.권 2호, 2016..
- \_\_\_\_\_.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현황, 동인,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연구』, 제24권 2호, 2014.
- Marte Boonen, Klara Boonstra, Remco Breuker(P.I.), Christine Chung, Imke van Gardingen, Kim Kwang-Cheol, Oh Kyuwook, Anoma van der Veere.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den: Leiden Asia Center, 2016.
- Ващук А.С.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012, № 1.
- \_\_\_\_\_. Факторы и условия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мигрантов из СНГ в Приморье: 90-е гг. XX в. //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освоен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Этн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Вып. четвертый. Благовещенск, 2001.
- Троякова Т.Г. Рабочая сила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Ойкумена, 2017. № 2.

### 3. 기타자료

『연합뉴스』.

『KBS』.

『RFA』.

『VOA』.

『YTN』.

*Gazeta Spb* (가제따 페테르부르크).

*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 (델로보이 페테르부르크).

*Известия* (이즈베스치아).

*Правда* (프라브다).

*RIA Novosti* (리아 노보스치).

*Tass* (타스).

현승수. “북러관계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22. 2014.12.31.

The Russian Federation.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 Putin on February 12, 2013

Smith Shane. “North Korean labor camps in Siberia.” 2011. <<http://edition.cnn.com/2011/12/15/world/asia/north-korean-labor-camps-in-siberia/index.html>>.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временной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раждан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http://www.mid.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storage-viewer/bilateral/page-121/45690](http://www.mid.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storage-viewer/bilateral/page-121/45690)>.

러시아 통계청. <<http://www.fedstat.ru>>.

Businessman. <<https://businessman.ru>>.

Nuzhnaviza. <<http://nuzhnaviza.ru>>.

Zashtatom. <<https://zashtatom.ru>>.

RBC. <<https://www.rbc.ru>>.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보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 기 타

2015 북한교회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역량구축(3/5년차)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